#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5호 2021. 9. 17.(금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71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72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3

## 규 칙

○ 하동군 규치 제1238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16
○ 하동군 규칙 제1239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8

##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70호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폐지규정·····19
○ 하동군 훈령 제371호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 폐지규정·····20
○ 하동군 훈령 제372호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21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1-1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화포지구) 26
○ 하동군 고시 제2021-17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잔너리지구) 28
○ 하동군 고시 제2021-17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부*)·····30
○ 하동군 고시 제2021-176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이영*)·····31
○ 하동군 고시 제2021-18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2
○ 하동군 고시 제2021-18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34
○ 하동군 고시 제2021-187호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3차) 승인 고시 35
○ 하동군 고시 제2021-188호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4차) 승인 고시 36
○ 하동군 고시 제2021-19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7
○ 하동군 고시 제2021-1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40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217호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21-1180호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46
○ 하동군 공고 제2021-1365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4
○ 하동군 공고 제2021-137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57
○ 하동군 공고 제2021-1414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7
○ 하동군 공고 제2021-1412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9

| 회람 |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337호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지1003호선 개량공사)·····174
○ 하동군 공고 제2021-1326호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175
○ 하동군 공고 제2021-1344호 소하천 점용연장 허가 공고·····176
○ 하동군 공고 제2021-1347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177
○ 하동군 공고 제2021-1348호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계획 공고·····180
○ 하동군 공고 제2021-1349호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 186
○ 하동군 공고 제2021-1356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187
○ 하동군 공고 제2021-1359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188
○ 하동군 공고 제2021-140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흥룡호암지구) 189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71 호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입세대”를 “전입”으로, “2명 이상 전입하여”를 “전입신고하여”로, “세대에”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지원사항
2. 전입 지원사항
3. 결혼장려 지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자 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 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1. 출산장려금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br>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첫째아이 440만원<br>·둘째아이 1,100만원<br>·셋째아이 1,700만원<br>·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br>(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
| 2. 출산축하용품 |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
|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br>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
| 4.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br>(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br>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br>월 3만원 이내<br>(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
| 5. 영유아 양육수당 |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br>(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br>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
| 6. 임산부 철분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6개월분 철분제 |
| 7. 태아 염색체 검사비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산부 | 60만원 이내 |

[별표 2]

# 전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 시 책 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1. 전입자 지원금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 · 1명 : 10만원<br>· 2명 : 30만원<br>· 3명 : 50만원<br>· 4명 이상 : 70만원 |
| 2. 전입학생 지원금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 중학생 30만원<br>· 고등학생 50만원 |
| 3.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 복무자 포함) | · 휴가비 : 30만원<br>(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
| 4.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 1인 30만원 |
| 5.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 · 전업 문화예술인 200만원 이내 |
| 6. 전입자 팸투어 |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 ·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
| 7. 결혼식장 무료 대여 |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 ·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
| 8. 영농정착 보조금 |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br>- 최근 2년 이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65세 미만)<br>※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도 가능<br>-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최근 2년 이내) | ·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br>·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소모성 (농약, 비료 등)영농자재, 묘목 및 종근 등 |
| 9. 영농기초기술교육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예비귀농 희망자 | · 영농기초기술교육 제공 |
| 10. 빈집정보 제공 |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 ·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

[별표 3]

#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 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br>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br>-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br>-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br>(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

[별표 4]

#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제2항 관련)

| 구 분 | 시 책 명 | 소관부서 | 비고 |
|---|---|---|---|
|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 행 정 과 | |
| | 출산축하용품 | 행 정 과 | |
| |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 행 정 과 | |
| | 다둥이 안전보험 | 행 정 과 | |
| | 영유아 양육수당 | 행 정 과 | |
| | 임산부 철분제 | 건강관리과 | |
| | 태아 염색체 검사비 | 건강관리과 | |
| 전입지원 | 전입자 지원금 | 행 정 과 | |
| | 전입학생 지원금 | 행 정 과 | |
| |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 행 정 과 | |
| |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행 정 과 | |
| |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문화체육과 | |
| | 전입자 팸투어 | 관광진흥과 | |
| | 결혼식장 무료 대여 | 문화체육과 | |
| | 영농정착 보조금 | 농촌진흥과 | |
| | 영농기초기술교육 | 농촌진흥과 | |
| | 빈집정보 제공 | 도시건축과 | |
| 결혼장려 지원 | 결혼장려금 | 행 정 과 | |

[별지 제1호서식]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 | | | | | | |
|---|---|---|---|---|---|---|
| 신 청 분 야 | ☐ 출산장려지원 ☐ 전입 지원 ☐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 | |
| 신청인 | 주 소 | 경남 하동군 읍·면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남, 여) | |
|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전화 | | |
| 계 좌 번 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세 부 신 청 사 항

| | | | | |
|---|---|---|---|---|
| 출산 장려 지원 | 대상자의 성 명 | | 생년월일 | |
| | 출생일자 | | 출생순위 | ☐첫째 ☐둘째 ☐셋째이상 |
| | ☐ 출산장려금<br>☐ 출산축하용품<br>☐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br>☐ 임산부 철분제<br>☐ 태아염색체 검사비<br>☐ 다둥이 안전보험<br>☐ 영유아 양육수당<br>※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br>▶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전입 지원 | 전 입 자 현 황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전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입자 지원금<br>☐ 전입학생 지원금<br>☐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br>☐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br>☐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br>☐ 전입자 팸투어<br>☐ 결혼식장 무료 제공<br>☐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br>☐ 특별 영농교육<br>☐ 빈집정보 제공<br>※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 | |
| 결혼 장려 지원 | ※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 세 부 신 청 사 항 | | | | |
|---|---|---|---|---|
| 결혼 장려 지원 | 대상자의 성명(夫) | | 생년월일 | |
| | 대상자의 성명(婦) | | 생년월일 | |
| | 혼인일자 | | 전입일자 (다문화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일자) | 대상자(남편) :<br>대상자(처) : |
| | <다문화 가정인 경우, 확인사항>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사업 수혜여부 접수읍면에서 소관부서에 직접 확인 | | □ 수혜사실( 년도) 있음.<br>□ 수혜사실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
|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
| 법정대리인 성명 | (인/서명) |
| 법정대리인 연락처 | |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성 명 : (인/서명)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2. (생 략)<br>3. "전입세대 지원"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br>4. (생 략) | 제2조(정의) ----------.<br>1.·2. (현행과 같음)<br>3. "전입 ---------- 전입신고하여 ---------- 사람에게 ----------.<br>4. (현행과 같음) |
|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별표 1과 같다.<br>② 전입세대 지원 대상은 별표 2와 같다.<br>③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한다(단, 1인 이상 전입도 가능).<br>④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신고한 군인(전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1. 출산장려 지원사항<br>2. 전입 지원사항<br>3. 결혼장려 지원사항<br>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br>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 | |
|---|---|
| 환복무자 포함)에게 지원한다.<br>⑤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br>⑥ 결혼장려 지원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 |
|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br>1. 출산장려 지원 사항 :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양수 검사비,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br>2. 전입세대 지원 사항 : 전입세대 지원금, 노인 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학생 지원금,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전입세대 팸투어, 결혼식장 무료 대여,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등<br>3. 결혼장려 지원 사항 : 결혼장려금 | <삭 제> |

| | |
|---|---|
|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종전제3호에서이동 2019.5.15.><br>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 |
| 제6조(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 략)<br>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br>1. ~ 3. (생 략)<br>⑤ ~ ⑪ (생 략) | 제6조(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④ ----------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br>1. ~ 3. (현행과 같음)<br>⑤ ~ ⑪ (현행과 같음)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72 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5조를 삭제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① ----------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 <삭 제> |

| | |
|---|---|
|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 감정평가법인등----------.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38 호

##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기관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제2항관련)

| 기 관 별 | 숙 직 | 일 직 |
|---|---|---|
| 본청 | o 당직사령 : 당직반장 대행<br>o 당직반장 : 6급 담당 1명<br>o 당직반원 : 직원 2명 | o 당직사령 : 5급 또는 주무 담당 1명<br>o 당직반원 : 직원 2명 |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 o 당직(재택당직 포함) : 1명 | o 당직(재택당직 포함) : 1명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2(당직수당) (생 략)<br><br><신 설> | 제6조의2(당직수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39 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br>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br>② ----------감정평가법인등----------. |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0 호

##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폐지규정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1 호

##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 폐지규정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2 호

#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서 "청사의 범위"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방호의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3. 읍·면사무소 : 읍·면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
2. 직속기관 : 주무부서 과장
3. 읍·면 사무소 : 부읍·면장

③ 군 본청, 직속기관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방호대원) 청사 방호대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역할)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감독
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의 총괄책임자 및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상황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방호대원의 역할)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하동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불법행위 중지, 장애 및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한다.

제7조(방호대원의 소집) 관리책임자는 제5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순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 관련 부서, 본청직원 1/3이내, 본청직원 1/2이내
2. 직속기관 : 직속기관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
3. 읍·면사무소 : 읍·면사무소 직원 1/2이내, 전 직원

제8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

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방호대원의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한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사람

②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사람

③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④ 음주로 몸을 가누자 못하는 사람

⑤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등을 소지한 사람

⑥ 그 밖의 민원인 다수의 불법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 놓는 행위
6.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허위사실 유포 및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비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2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

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 제13조제2항 관련)

제 호

###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성명(단체명) 귀하(귀중)
주 소

귀하(귀 단체)는 하동군 ◯◯청사에서 (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검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동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21-171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지구명 | 위치 | 지정개요 | | | 지정사유 | 비고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 화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55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263,846 | 진교배수장 유수지의 퇴적으로 인한 용량부족으로 내수침수 발생.<br>화포안골소하천, 화포서리소하천의 전구간 제방고의 부족으로 월류피해 발생. |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21년 8월 24일

하 동 군 수

#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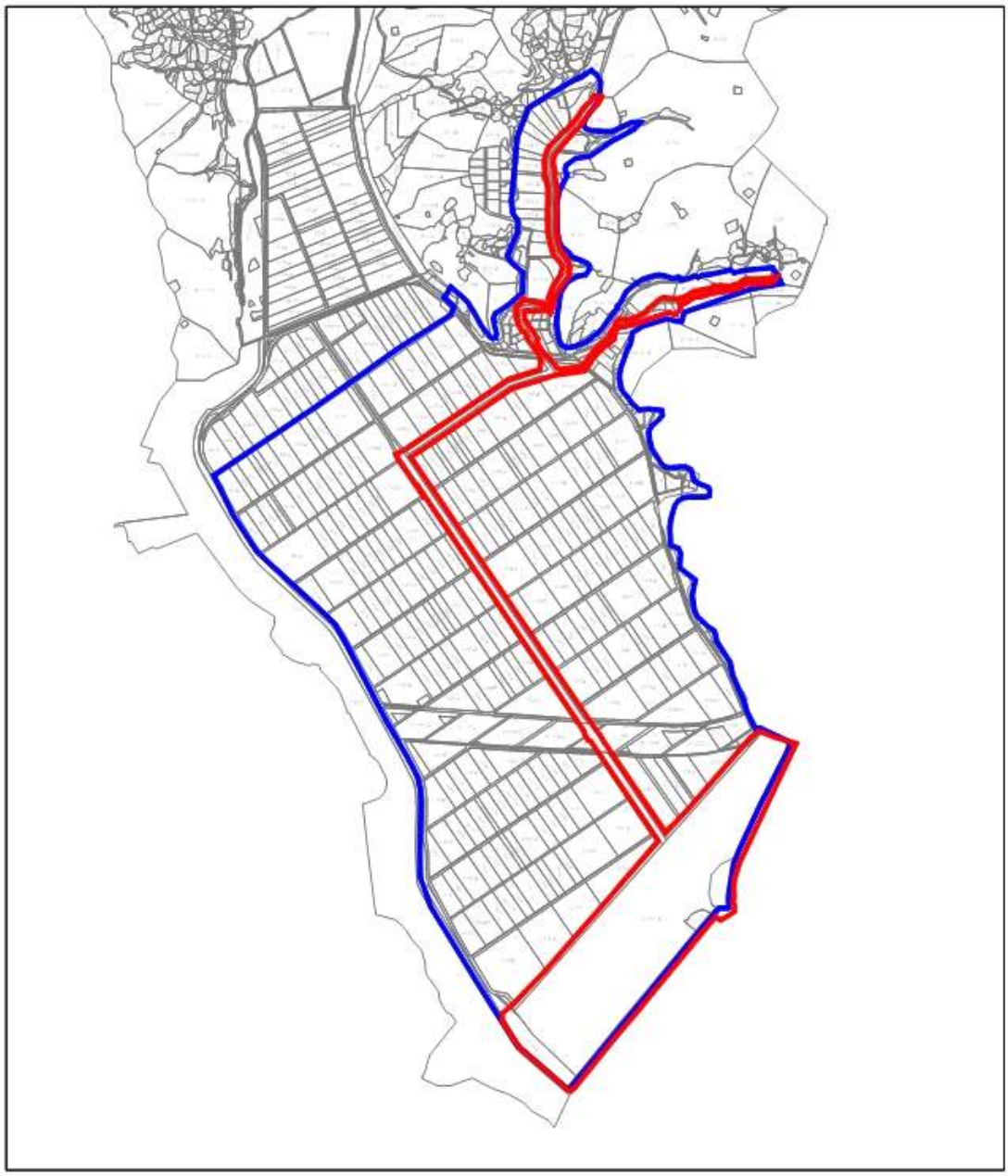

□범 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적선

침수구역

S=1:5,000

30 0 50 100m

지정권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

지정일자 : 2021년 08월 24일

고시년도 : 2021년 08월 24일

고시번호 : 고시문 참조

작성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하동군 고시 제2021-172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지구명 | 위치 | 지정개요 | | | 지정사유 | 비고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 잔너리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468-5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363,842 | 고전천, 주교천의 합류부로 지대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자연방류가 어려우며, 대덕 1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내수침수 발생 |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21년 8월 24일

하 동 군 수

# 잔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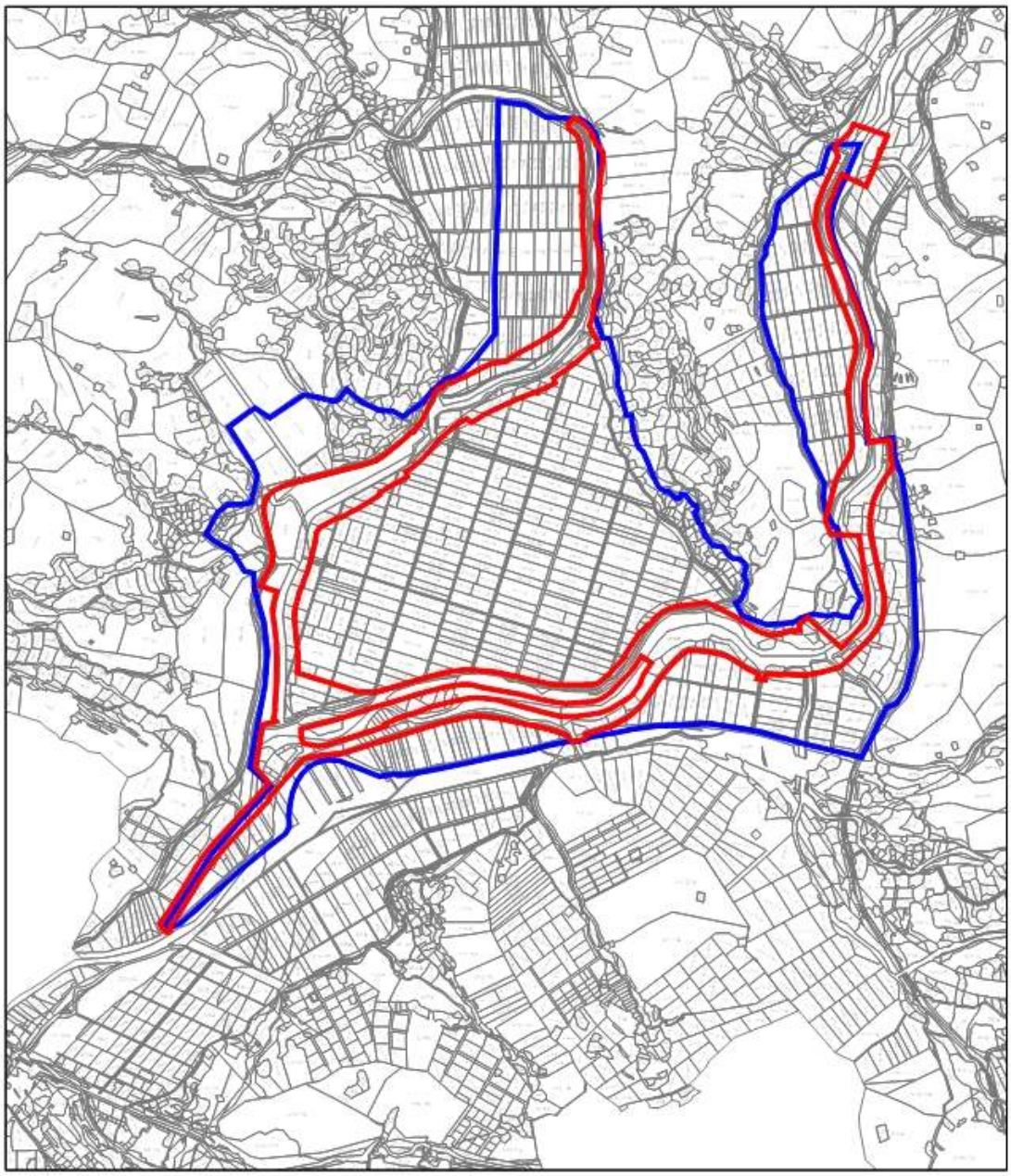

□ 범 례 □

- 자연재해위험지구
- 지적선
- 침수구역

S=1:5,000

30 0 50 100m

지정권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

지정일자 : 2021년 08월 24일

고시년도 : 2021년 08월 24일

고시번호 : 고시문 참조

작성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17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8. 25.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28호
2. 허가연월일 : 2021. 08. 24.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933, 127㎡
5. 점·사용의 기간 : 2021. 08. 24. ~ 2031. 08. 23.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새터길 **, 김부*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176호

「하천법」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8. 27.

하 동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화개천
2. 허가연월일 : 2021.08.26.
3. 점용자 :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 이영*
4. 점용의 목적 : 담장 설치
5. 점용위치 :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381
6. 점용면적 : 1㎡
7. 점용허가 기간 : 2021. 8. 26. ~ 2026. 8. 25.

하동군 고시 제2021 - 180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124-6 외 11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12건) | | | | |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30-6 외 13건

|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14건)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8.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14-24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124-6 | 20210830 | | 20070618 |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14-9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124-2 | 20210830 | | 20070618 |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14-12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124-26 | 20210830 | | 20070618 |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25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43-22 | 20210830 | | 20090302 |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67-1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세이리길 4 | 20210830 | | 20090302 | 계산마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들을 세이리들이라 하여 세이리길로 명명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446-4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길 119 | 20210830 | | 20080402 | 여의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85-3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377-4 | 20210830 | | 20070618 |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415-7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36-32 | 20210830 | | 20070618 |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172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묵길 71-4 | 20210830 | | 20070618 | 박석거리, 전나무동,서재땀,원묵계 등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57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53-2 | 20210830 | | 20110621 |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97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3-15 | 20210830 | | 2009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10-3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3-9 | 20210830 | | 20090302 | 동산골이라는 옛지명 반영 | |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30-6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10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08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99-1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68-1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4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9-2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5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3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길 74-82 | 20210830 | 건축물 멸실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명사길 431-195 | 20210830 | 건축물 멸실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명천2길 27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18-3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80-19 | 2021083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하동군 고시 제2021-183호**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 구분 | 명 칭 | 하천명 | 위 치 | | | 목 적 | 공사개요 | 공 사 기 간 | 비고 |
|---|---|---|---|---|---|---|---|---|---|
| | | | 시군 | 읍면 | 동리 | | | | |
| 사업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 복구사업 | 율동천 고동골천 | 하동 | 하동 | 두곡 화심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 -고지배수로 L=690m<br>-도로이설 L=447.0m<br>-수문펌프1식<br>-부대공 1식 등 | 2021.10. ~ 2022.12. (15개월간)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 동 군 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참조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25,683백만원

※ 관계도면은 하동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 2021-187 호

#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3차) 승인 고시

하동군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3차)을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09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 업 비 : 금29,714천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일원
○ 사업내용
- 무선 정금방송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계 | 500 | - | 250 | 250 |
| 국 비 | - | - | - | - |
| 도 비 | - | - | - | - |
| 군 비 | 500 | - | 250 | 250 |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 2022년(2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T.055.880.2548)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하동군 고시 제 2021-188 호

#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4차) 승인 고시

하동군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4차)을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09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금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특성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3. 사 업 비 : 금138,974천원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일원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계 | 500 | - | 250 | 250 |
| 국 비 | - | - | - | - |
| 도 비 | - | - | - | - |
| 군 비 | 500 | - | 250 | 250 |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 2022년(2개년)

8. 기타사항
○ 주요 사업내용, 세부 설계도서 등은 담당부서(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T.055.880.2548)에 비치하며, 일반인 열람 가능

하동군 고시 제2021 - 193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2길 66-47 외 14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15건) | | | | |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7-4 외 23건

|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24건)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9.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227-1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2길 66-47 | 20210914 | | 20070618 |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35-4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계산길 16 | 20210914 | | 20070618 | 뒷산의 계명산아래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178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212-28 | 20210914 | | 20090702 |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013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170 | 20210914 | | 20090302 |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149-1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43 | 20210914 | | 20090710 |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76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5 | 20210914 | | 20090302 | 궁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6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33 | 20210914 | | 20090302 | 해안을따라 지나는길이라 명명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76-23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141-9 | 20210914 | | 20070618 |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69-1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73 | 20210914 | | 20070618 |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53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3 | 20210914 | | 20080402 | 원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50-3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37 | 20210914 | | 20080402 | 제먼당이라는 지명 반영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570-4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09-8 | 20210914 | | 20070618 |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56-9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7 | 20210914 | | 20090702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2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33 | 20210914 | | 20090702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 건물번호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80-3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62-149 | 20210914 | | 20070618 |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7-4 | 200903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구시장길 26-8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54-59 | 200907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9-3 | 20070618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88-2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84-4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84-3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79-4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62-2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42-32 | 20140701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 | | |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273 | 200903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황시골길 6 | 200903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33-14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33-11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33-9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27-3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27-1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123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9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6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50-11 | 2009071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50-9 | 2009071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4-5 | 20090710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회목길 12-191 | 2008040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19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9. 1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30호
2. 허가연월일 : 2021. 09. 14.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814, 5㎡
5. 점·사용의 기간 : 2021. 09. 14. ~ 2022. 09. 13.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김서*

하동군 공고 제2021-1217호

#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 계획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다. 교육이수 및 유예,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하동군(문화체육과, 전화055-880-2365, FAX 055-880-2369, e-mail yangih7176@korea.kr)에게 **【별지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강사)** ①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음악산업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부칙** <제17717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1180호

#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

2. 제안 이유 :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청사방호의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4조)
   다. 계약의 체결(안 제6조)
   라. 위탁 취소(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e-mail jin812@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안)

【별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훈령 제 호

#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안

하동군 청사방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서 "청사의 범위"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방호의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3. 읍·면사무소 : 읍·면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
2. 직속기관 : 주무부서 과장
3. 읍·면 사무소 : 부읍·면장

③ 군 본청, 직속기관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방호대원) 청사 방호대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역할)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감독
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의 총괄책임자 및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상황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방호대원의 역할)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하동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불법행위 중지, 장애 및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한다.

제7조(방호대원의 소집) 관리책임자는 제5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순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 관련 부서, 본청직원 1/3이내, 본청직원 1/2이내
2. 직속기관 : 직속기관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
3. 읍・면사무소 : 읍・면사무소 직원 1/2이내, 전 직원

제8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방호대원의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한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사람
②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사람
③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④ 음주로 몸을 가누자 못하는 사람
⑤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등을 소지한 사람
⑥ 그 밖의 민원인 다수의 불법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

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 놓는 행위
6.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허위사실 유포 및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비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2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라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하동군 청사방호 규정 제13조제2항 관련)

제 호

#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성명(단체명) 귀하(귀중)
주 소

귀하(귀 단체)는 하동군 ◯◯청사에서 (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검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동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1-1365호

#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2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체육과, 전화 055-880-2064, FAX 055-880-2369, e-mail jm0803@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중 “2021년 12월31일”을 “2026년 12월31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31일------. ----------. |

하동군 공고 제2021- 1371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으로 2022.1.1.이후부터 총 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자치단체 규칙에 위임하여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정비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 개선내용 중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행정과(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53, FAX 880-2159, e-mail : hur4444@korea.kr)로【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3조의2 중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4조”를 “영 제64조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연령ㆍ학력 또는”을 “연령ㆍ학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과목”을 “매 과목”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규임용시험”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으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를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2 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를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각각 “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여야”를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조”를 “제6조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내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를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 동표에 규정된”을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7조제1항제11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가 영 제11조”를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을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따라”를 “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33조제8항”을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을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으로,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를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로, “범위”를 “범위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청 및 사업소"를 각각 "본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자에 대해서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를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로, "제34조의"를 "제34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의4, 별표 16,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의 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별표 1]

##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6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 직렬 \ 직류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 국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 | 국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 편사연구 | 편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 자 | |
| | 금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섬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화 학 | |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물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직렬 \ 직류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산업곤충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생명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촌생활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식품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 조 경 | |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직렬 \ 직류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공학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경제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시설연구 | 토 목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건 축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방재안전 연구 | 안전관리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 | 재난관리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 (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 직렬 \ 직류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4]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br>데 이 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br>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2급<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4급<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6급<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6급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직렬 \ 계급 / 직류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지 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 | 기술사(지적)<br>기사(지적)<br>산업기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 조리기능장<br>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

### 2. 삭제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br>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데 이 터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br>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br>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br>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농업기계 | |
| | 기계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br>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br>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br>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조 선 | 기술사: 조선<br>기사: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전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br>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br>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br>기능사: 염색<br>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 능 장 : 위험물, 가스<br>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br>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br>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br>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산업기사 :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br>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식물검역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br>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br>기 사 : 축산,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식품<br>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br>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br>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br>기능사 : 산림, 조경 |
|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기능사 : 산림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br>기 사 : 산림,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br>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기능사: 잠수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능장: 전기, 전자기기<br>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능사: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 사 : 항공<br>산업기사 : 항공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br>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농업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지 적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측 지 | |
| | 교통시설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도시교통 설 계 | |
| | 디자인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설비, 건축,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br>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통신기술 |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 기 술 | |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조리<br>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br>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위생 | 사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br>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행 정 | 일반행정<br>법무행정 | 변호사,<br>변리사(4) | 변리사 | | | |
| | 재 경<br>국제통상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노 동 | 변호사<br>공인노무사(7)<br>직업상담사1급<br>(10) | 공인노무사(3)<br>직업상담사1급(6) | 공인노무사<br>직업상담사1급(3) | 직업상담사1급<br>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감정평가사(7)<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br>세무사(3) | 감정평가사<br>세무사 | | |
| | 감 사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br>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br>감정평가사(3) | 세무사<br>감정평가사 |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 | 세무사 | | |
| 교 육<br>행 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br>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br>데 이 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br>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br>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br>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br>무대음향전문인3급 |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br>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br>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br>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br>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br>핵연료물질 취급자(3),<br>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br>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br>핵연료물질 취급자,<br>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br>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br>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br>수의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br>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br>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br>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br>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br>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의사(2)<br>한의사(2)<br>치과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한약사(7)<br>조산사(12)<br>간호사(12)<br>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br>약사(3)<br>한약사(3)<br>조산사(6)<br>간호사(6)<br>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br>약사<br>한약사<br>조산사(3)<br>간호사(3)<br>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br>간호사<br>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 방 역 | 의사(2)<br>한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간호사(12) | 수의사(3)<br>약사(3)<br>간호사(6) | 수의사<br>약사<br>간호사(3)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br>영양사(12) | 위생사(8)<br>영양사(8)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12)<br>방사선사(12)<br>물리치료사(12)<br>치과기공사(12)<br>치과위생사(12)<br>작업치료사(12)<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br>방사선취급감독자(5)<br>임상심리사1급(7) | 임상병리사(8)<br>보건의료정보관리사(8)<br>방사선사(8)<br>물리치료사(8)<br>치과기공사(8)<br>치과위생사(8)<br>작업치료사(8)<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br>방사선취급감독자<br>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br>보건의료정보관리사(5)<br>방사선사(5)<br>물리치료사(5)<br>치과기공사(5)<br>치과위생사(5)<br>작업치료사(5)<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3) | 임상병리사(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2)<br>방사선사(2)<br>물리치료사(2)<br>치과기공사(2)<br>치과위생사(2)<br>작업치료사(2)<br>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br>보건의료정보관리사<br>방사선사<br>물리치료사<br>치과기공사<br>치과위생사<br>작업치료사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2)<br>한의사(2) | | | | |
|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7)<br>한약사(7) | 약사(3)<br>한약사(3) | 약사<br>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환 경 | 일반환경<br>수 질<br>대 기<br>폐 기 물 | 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위생사(12)<br>환경측정분석사(7)<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br>약사(3)<br>위생사(8)<br>환경측정분석사(3)<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br>약사<br>위생사(5)<br>환경측정분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위생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br>항공사(10)<br>항공기관사(10)<br>항공교통관제사(10)<br>항공정비사(10)<br>항공공장정비사(10)<br>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br>항공사(6)<br>항공기관사(6)<br>항공교통관제사(6)<br>항공정비사(6)<br>항공공장정비사(6)<br>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br>항공사(3)<br>항공기관사(3)<br>항공교통관제사(3)<br>항공정비사(3)<br>항공공장정비사(3)<br>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br>항공사<br>항공기관사<br>항공교통관제사<br>항공정비사<br>항공공장정비사<br>운항관리사 |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br>항공공장정비사(10)<br>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br>항공공장정비사(6)<br>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br>항공공장정비사(3)<br>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br>항공공장정비사<br>항공기관사 |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br>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br>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 속 기 | 속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 위 생 | 위생 | |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 | 사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간호조무사 |
| 운전 | 운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한시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신설>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6]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직류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공업연구 | 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화 공<br>화 학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농업연구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약사 |
| | 농업환경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br>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br>약사, 위생사(5) |
| | 작물보호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 | 산업곤충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6)<br>※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직렬 \ 직류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br>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br>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
| | 농식품 개발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 업<br>조 경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수의연구 | 수 의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경제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보건연구 | 의 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 학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직렬 \ 계급 / 직류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환경연구 | 환 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br>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br><br>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
| 시설연구 |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기사(방재) |
| | 재난관리 | | 기사(방재)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직류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농촌지도 | 농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잠 업 | 기술사(생사)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6)<br>※1999.3.27이전 취득 |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가축위생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 농촌사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농업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br>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어촌지도 | 어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br>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br>데 이 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 업 | 일반기계<br>농업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 | 기계운전 |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br>철도교통안전관리자<br>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br>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원 자 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br>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공 업 | 가 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 가스)<br>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자 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br>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br>가축인공수정사 |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식품) |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br>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조 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 설원예) |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림, 식물보호)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어 로 | | | |
| | 해양교통 시 설 | | | |
|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1·2급 항해사<br>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br>3·4급 항해사<br>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5·6급 항해사<br>5·6급 기관사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br>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br>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br>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5·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보 건 | 방 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br>의사, 약사, 수의사 | 광해방지)<br>위생사 | |
|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br>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br>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br>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일반토목<br>수도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 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직렬 \ 직류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교통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설계 | | | |
|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통신기술 | | | |
| | 전송기술 | | | |
| | 전자통신기술 | | | |
| 조리 | 조리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r>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운전 | 운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가산대상 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 8・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4]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br>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br>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농업기계 | | |

| | | | | |
|---|---|---|---|---|
| 공 업 | | 산업기사 :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 | | 기 능 사 :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 기계운전 | 기 술 사 :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 | 기 능 장 :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 | | 기 사 :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
| | | 산업기사 :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
| | | 기 능 사 :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 조 선 | 기 술 사 :<br>기 사 :<br>산업기사 :<br>기 능 사 : | 조선<br>일반기계, 조선<br>조선, 컴퓨터응용가공<br>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 | | 기 능 장 : | 전기 | |
| | | 기 사 :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산 업 기 사 :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 기 능 사 :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 | | |
|---|---|---|---|
| 공 업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br>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br>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
|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br>기 능 사 : 염색<br>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 능 장 : 위험물, 가스<br>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br>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br>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br>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 |

| | | |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br>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 | 식물검역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br>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 축 산 | 기 술 사 : 축산, 식품<br>기 사 : 축산,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br>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기 능 사 : 산림 | |
| | 산림이용 | 기 술 사 : 산림<br>기 사 : 산림,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br>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br>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br>기 능 사 : 조경, 산림 | |

| | |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br>기 능 사 : 잠수 |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시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 능 사 : 식품가공<br><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2급<br><br>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 | | | |
|---|---|---|---|
| 보 건 | 방 역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방사선관리<br>기 사 : 의공<br>산업기사 : 의공<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br>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br>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 | | |
|---|---|---|---|
| 환 경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br>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 능 장 : 산림<br>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 능 장 : 산림<br>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br>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농업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 | |
|---|---|---|---|
| 시 설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 측 지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br>도시교통설계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 디자인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br>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 방송통신 | 통 신 사<br>통신기술<br>전송기술<br>전자통신기술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

| | | |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br>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기 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 |
| 공업연구 | 전 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 | | |
|---|---|---|---|
| 공업연구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 화 공<br>화 학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 능 장 : 위험물, 가스<br>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br>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 | 산업경영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br>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br>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 물 리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br>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 농업연구 | 농식품 개발 |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br>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br>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 작 물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농촌지도 | 농 업 | | |

| | | |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촌지도 | 원 예 |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산업곤충 |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잠 업 |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농촌생활 |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br>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 | | | | |
|---|---|---|---|---|
| 농업연구 | 농 공 | 기 술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 기 사 :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 산업기사 :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농업연구 | 축 산 | 기 술 사 : |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 | 기 사 : | 축산, 식품 | |
| 농촌지도 | 축 산 | 산업기사 : | 축산, 식품 | |
| 녹지연구 | 임 업 | 기 술 사 :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 | 조 경 | 기 사 :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농촌지도 | 임 업 | 산업기사 :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 술 사 : |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 기 사 : | 축산 |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산업기사 : | 축산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기 술 사 :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 | 수산자원 | 기 사 :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
| 어촌지도 | 어 촌 | 산업기사 :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 | | |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br>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br>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식품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b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br>임상심리사 1급<br>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 환경연구 | 환 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 | | | |
|---|---|---|---|
| 시설연구 | 토 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시설연구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
| 방재안전 연구 | 안전 관리 | 기 사 : 방재 | |
| | 재난 관리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 | 2급·연구관 지도관 | 3급·연구관 지도관 | 4급·연구관 지도관 | 5급·연구관 지도관 | 6급·연구사 지도사 | 7급·연구사 지도사 | 8급 | 9급 |
|---|---|---|---|---|---|---|---|---|---|---|
| 경 찰 공 무 원 | |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br>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공 무 원 | | | 소 방<br>정 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군 인 | |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위<br>준 위<br>원 사 | 상 사<br>중 사 | 하 사 |
|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 | 교 수<br>(3년이상)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br>강 사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 | | 24호봉 이 상 | 16호봉 이 상 | 12호봉 이 상 | 11호봉 이 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17호봉 이 상 | 11호봉 이 상 | 7호봉 이 상 | 6호봉 이 하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19호봉 이 상 | 13호봉 이 상 | 9호봉 이 상 | 8호봉 이 하 | | |
| 판 사·검 사 | | | 9호봉 이 상 | 6호봉 이 상 | 4호봉 이 상 | | | | | |
| 기 능 직 공 무 원 | | | | | | | 6급 이 상 | 7급 | 8급 | 9급 이 하 |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 |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 | | | 6년 | 3년 | 3년 |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9]

##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원 자 력 |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
| | 조 선 |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
|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섬 유 |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
| | 일반화공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br>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 금 속 |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
| | 자 원 | 광산, 자원개발, 지질 |
| 녹 지 | 산림자원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 | 산림보호 | 임업, 임학, (농)생물학 |
| | 산림이용 |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 축 산 |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
| 수 의 | 수 의 | 수의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
| | 일반수산 | |
| | 일반선박 |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br>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
| | 선박항해 | 항해(학) |
|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
| | 어 로 |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
| | 해양교통시설 |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 | 지 적 |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
| | 측 지 |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br>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통신기술 |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기술 |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
| | 조 종 | 항공운항학 |
| | 정 비 |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 약 무 | 약 무 |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 직 렬 | 관 련 학 과 |
|---|---|
| 농 촌 지 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
| 어 촌 지 도 |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

[별표 10]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 구분 |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연구사 및 지도사 |
|---|---|---|---|---|---|
|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 | 기술직 |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공업연구 | 기계 | 공업 | 일반기계 |
| | | | 농업기계 |
| | | | 기계운전 |
| | 전기 | | 일반전기 |
| | 전자 | | 전자 |
| | 금속 | | 금속 |
| | 섬유 | | 섬유 |
| | 화공 | | 화공 |
| | 화학 | | |
| | 물리 | | - |
| 농업연구 | 작물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농업환경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작물보호 | 농업 | 일반농업 |
| | | | 식물검역 |
| | | 농촌지도 | 농업 |
| | 농업경영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 | 농업경영 |
| | 산업곤충 | 농촌지도 | 잠업 |
| | 원예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 | 원예 |

| 연구직 | | 기술직 |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농업 | 일반농업 |
| | 농촌생활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 | | 농촌생활 |
| | 축산 | 농업 | 축산 |
| | | 농촌지도 | 축산 |
| | 농공 | 공업 | 농업기계 |
| | | 시설 | 농업토목 |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 | | | 농업토목 |
| 녹지연구 | 임업 | 임업 | 전직류 |
| | 조경 | 농촌지도 | 임업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 | 수의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환경 | 수질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자원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양식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공학 | 해양수산 | 어로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가공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경제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보건연구 | 의학 | 의무 | 일반의무 |
| | | | 치무 |
| | 약학 | 약무 | 약무 |
| | 공중보건 | 보건 | 보건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 | 전직류 |
| 시설연구 | 토목 | 시설 | 일반토목 |
| | | | 농업토목 |
| | 건축 | | 건축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 | 재난관리 | | |

2. 지도직공무원

| 지도직 | | 기술직 |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농촌지도 | 농업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업연구 | 작물 |
| | | | 작물보호 |
| | | | 농업환경 |
| | | | 농업경영 |
| | | | 원예 |
| | 농업경영 | 농업연구 | 농업경영 |
| | 임업 | 녹지 | 전직류 |
| | | 녹지연구 | 임업 |
| | | | 조경 |
| | 잠업 | 농업연구 | 산업곤충 |
| | 원예 | 농업연구 | 원예 |
| | 축산 | 농업 | 축산 |
| | | 농업연구 | 축산 |
| | 가축위생 | 수의 | 수의 |
| | | 수의연구 | 수의 |
| | 농촌사회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 | 농업기계 | 공업 | 농업기계 |
| | | 농업연구 | 농공 |
| | 농업토목 | 시설 | 농업토목 |
| | | 농업연구 | 농공 |
| | 농촌생활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 어촌지도 | 어촌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 어로 |
| | | 해양수산연구 | 전직류 |

[별표 12]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 계 급 | 연 구 직 | 지 도 직 |
|---|---|---|
| 2 급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3 급 |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4 급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5 급 |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
| 6 급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7 급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 8 급 | | |
| 9 급 | | |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 구분 \ 상당 계급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일반직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 연구관 지도관 | 연구사 지도사 | | | |
| 임기제 공무원 | 일반임기제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국가)전문임기제 |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 (지방)전문임기제 |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 | | |
| | 한시임기제 | |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 | 시간선택제임기제 | | |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
| 전문경력관 | |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경찰공무원 | |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공무원 | | | 소방정 지방소방정 | 소방령 지방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방장 지방소방장 | 소방교 지방소방교 | 소방사 지방소방사 |
| 군인 | |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중사 | 하사 |
|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교육공무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
| | 초·중등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
|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 |
| 판사·검사 | | | 4-2호봉 | | | | | |

[별표 15]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제1항 관련)

## 1. 5급부터 9급까지

| 계급 / 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산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업 (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
| 공업 (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br>기능장(전기, 전자기기)<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

| 계급 / 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공업<br>(금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공업<br>(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
| 공업<br>(화공)<br>(가스)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br>기능장(위험물, 가스)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
| 공업<br>(자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 농업<br>(농업) |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
| 농업<br>(축산)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br>가축인공수정사 |
| 녹지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
| 수의 | 수의사 | | |
| 해양수산<br>(수산)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
| 해양수산<br>(선박) |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br>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br>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br>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br>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
| 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호 | | 간호사, 조산사 | |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br>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
| 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br>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br>자가용조종사 |
| 시설<br>(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
| 시설<br>(토목, 수도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설<br>(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시설<br>(지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시설<br>(측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 시설<br>(교통)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방송통신<br>(통신사)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
| 방송통신<br>(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
| 방송통신<br>(전자통신기술)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
| 위생 | |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br>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br>위생사, 영양사 |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br>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토목운영 |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축운영 |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건축사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통신운영 | | 기술사(정보통신)<br>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br>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
| 전기운영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br>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br>기능장(전기) |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

| 직렬 \ 계급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기계운영 |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br>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
| 화공운영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능장(위험물, 가스)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가스운영 | |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br>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br>기능장(가스, 위험물) |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
| 선박항해 운영<br>선박기관 운영 | |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br>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br>1・2・3・4급 항해사<br>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br>5・6급 기관사 |
| 농림운영 | |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br>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
| 보건운영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br>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2. 연구사

| 직렬 \ 계급 | 연 구 사 |
|---|---|
| 공 업 연 구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
| 농 업 연 구 |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
| 농 업 연 구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br>수의사 |
| 농 업 연 구 (농 공)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br>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
| 농 업 연 구 (농식품개발) |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br>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br>영양사, 위생사 |
| 녹 지 연 구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br>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
| 해 양 수 산 연 구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br>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
| 보 건 연 구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br>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br>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환 경 연 구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br>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 시 설 연 구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 시 설 연 구 (건 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br>건축사 |
| 방재안전연구 | 기사(방재) |

3. 지도사

| 계급 / 직렬 | 지 도 사 |
|---|---|
| 농 촌 지 도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어 촌 지 도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

4.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 기준

| 가산점의 부여 기준 | 가산점 |
|---|---|
|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0 |
|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 |

비고

1.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 등급에 따른 총가산점은 0.5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반영
4. 자격취득(발급일자) 1년 이내 가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경과된 자격증은 미반영

5.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가산점 부여기준

| 외국어 |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 가산점 |
|---|---|---|
| 영어 | 토플 530점(CBT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br>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br>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 0.25 |
| 그 밖의 외국어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 0.25 |

비고

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2.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하고, 외국어 시험성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

[별표 16]<신설>

#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5조의2제2항 관련)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 부여 요건 | 가산점 |
|---|---|
| 해당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우<br>(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최초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아래 가산점 부여(최대 0.75점)<br>- 특·갑지 0.025점, 을지 0.018점, 병지 0.013점 |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 분 야 | 부 여 기 준 |
|---|---|
| 인사교류 |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br>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 부여(최대 2.4점) |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업무 분야 | 부 여 기 준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직접적 ·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 부여 |
| 재난 및 안전관리 | 다음 각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적 ·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 부여<br>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r>나. 「자연재해대책법」<br>다. 「소하천정비법」<br>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br>마. 「재해구호법」<br>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br>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br>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br>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br>차. 「지진·화산재해 대책법」<br>카. 「풍수해보험법」<br>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br>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년 초과월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월 0.05점 부여) 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총 0.75점까지 가산점 부여

4.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구 분 | 가산점 |
|---|---|
| ·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10점 |
| ·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12점 |
| ·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15점 |

※ 최대 2.40점까지 가산점 부여

[별표 17]<신설>

##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제25조의2제3항 관련)

| 분야<br>(배점<br>한도) | 실적가산점 평가기준 | 비고 |
|---|---|---|
| ①<br>군 정<br>발 전<br>기여도 | ○ **대 상 : 기관표창 수상 유공자**<br>- 소관업무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청), 도, 군의 기관평가 결과 수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업무담당자, 담당주사, 과장(면장)<br><br>○ **배 점**<br>- 중앙평가 : 최우수(1.0점), 우수(0.7점), 장려(0.5점)<br>- 도 평가 : 최우수(0.7점), 우수(0.5점), 장려(0.3점)<br>- 군 평가 : 최우수(0.3점), 우수(0.2점)<br>⇒ 축제 및 공모 선정 등 중앙 및 도단위 평가도 동일 적용<br><br>※ 추가가점 : 시상금(상사업비 포함)<br>· 5억원이상 : 0.4점 별도 가점<br>·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0.3점 별도 가점<br>·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2점 별도 가점<br>·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1점 별도 가점<br><br>○ **적 용**<br>- 대상 기간 : 공문 확정 발송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해당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가점 인정<br>(月단위로 계산하며, 16일 이상은 1月로 계산)<br>예) 연말 중앙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수상시 해당부서에서 4월 근무한 직원의 가점 산출은<br>· 산출 가점 : 0.33점 = 1.0점×(4월/12월)<br>- 국.도.군정 기관표창이 2개 이상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br>- 기관표창과 기관표창에 따른 개인표창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br>- 군단위 평가는 읍면에 대한 평가만 반영하며, 본청내 실과단소의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

| 분야<br>(배점<br>한도) | 실적가산점 평가기준 | 비고 |
|---|---|---|
| ②<br>개 인<br>포 상 | ○ 대 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을 수상한 자<br>○ 배 점<br>- 훈・포장 : 0.6점<br>- 대통령표창 : 0.5점<br>- 국무총리표창 : 0.4점<br>- 장・차관 및 도지사표창 : 0.2점<br>- 군수표창 : 0.1점<br>-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 0.3점<br>○ 적 용<br>- 평정대상기간중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받은 포상만 인정하되<br>- 포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함<br>※ 기관표창에 따른 개인포상이 있는 경우 기관표창과 개인포상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반영 | |
| ③<br>창안·시책<br>·업무<br>발굴 | ○ 대상 : 정부, 도 및 군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채택된 자<br>○ 배점<br>㉮ 정부제안규정 : 0.5점(금상 0.5점, 은상 0.4점, 동상 0.3점, 장려 0.2점)<br>㉯ 도·군 제안규정 : 0.4점(금상 0.4점, 은상 0.3점, 동상 0.2점, 장려 0.1점)<br>㉰ 창의적인 시책 또는 업무, 규제개혁사례 발굴 : 0.5점 (최우수 0.5점, 우수 0.3점, 장려 0.2점)<br>㉱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0.2점(우수 0.2점, 장려 0.1점)<br>○ 적용<br>- 제안자 본인에 대하여만 적용<br>- 포상과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br>- 시책 또는 업무, 규제개혁발굴은 해당부서로부터 통보된 실적에 한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내 가점 중복 적용 | |

| 분야<br>(배점<br>한도) | 실적가산점 평가기준 | 비고 |
|---|---|---|
| ④<br>국·도비<br>예 산<br>확 보 | ○ 대상 : 국도비(군비 부담분 제외) 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인 자<br>○ 배점<br>- 50억원 이상 확보자 : 0.5점<br>-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확보자 : 0.3점<br>-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확보자 : 0.1점<br>○ 적용<br>- 의례적인 국·도비를 제외하고 사업발굴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한 예산유치 예산 확보시에만 적용<br>- 핵심기여자 및 담당주사 각 1인에 대하여 배점의 만점 인정 | |
| ⑤<br>예 산<br>절 감 | ○ 대 상 : 1천만원이상 연간 예산절감 유공 공무원<br>○ 배 점<br>- 1억원 이상 절감 : 0.5점<br>-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3점<br>-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0.2점<br>-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0.1점<br><br>○ 적 용<br>- 제도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예산절감에만 적용되며, 창안과 관련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br>- 직접 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
| ⑥<br>투 자<br>유 치 | ○ 대상 및 배점<br>- 3.0점 : 2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br>- 2.0점 : 10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br>- 1.5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br>○ 적용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실적가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서 핵심기여자, 담당주사에 대하여 배점의 만점 인정 | |

| 분야<br>(배점<br>한도) | 실적가산점 평가기준 | 비고 |
|---|---|---|
| ⑦<br>격무<br>부서<br>근무 | ◦ 대 상 : 선정된 소속 부서 전직원<br>- 본청, 직속기관 : 10담당<br>- 읍·면 : 2개 읍·면<br>◦ 배 점 : 1.2점 이내, 매월 0.05점<br>◦ 적 용<br>- 매월 0.05점 최대 2년간 1.2점까지 부여<br>(1회 근평시 최대 0.3점, 6개월*4회)<br>- 하동군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격무부서 선정 | |
| ⑧<br>인구<br>시책<br>유공 | ◦ 대 상 : 6급 이하 직원, 셋째아이 출산시<br>◦ 배 점 : 0.2점<br>◦ 적 용 : 1회 | |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 | | | | | | | | | | | |
|---|---|---|---|---|---|---|---|---|---|---|---|---|---|---|---|
| ※응시번호 | | | | | | | 성명 | (한글) | | | | | | | 사 진<br>[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 | | | | | (한자) | | | | | | | |
| 주민등록<br>번 호 | | | | | | | - | | | | | | | | |
| 주 소 | (우 )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복수국적 | | | | | | | | | | | 수입증지<br>붙이는 곳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 )임용시험 | |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성명 | | 사 진<br>[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생년월일 | | | | |
| 20 년 월 일<br>○○○장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 | | |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 (한자) | |
| 주민등록<br>번 호 | - | 복수국적<br>해당여부 | | |
| 주 소 | (㊀ ) | | | 수입증지<br>붙이는 곳 |
| 전자우편 | | | | |
| 전 화<br>(휴대전화) | | | | |

---

# 응 시 표 ( )임용시험

| | | | |
|---|---|---|---|
| ※응시번호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
| 성명 | | | |
| 20 년 월 일<br>○○○장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 )년도 제 회 | | |
|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 지구 | 번 | |
| 직급별 | 급 직 | | |

| | | | | |
|---|---|---|---|---|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 |
| ※ 급 | 직 | | | |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
| | (한문) | 제1지역 시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영문) | 제2지역 시군 | ㊞ | ㊞ |
| ④ 주 소 | | | (사진부착) | |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 |
| | 휴 대 폰 : | | |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 |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 ⑨ 상 벌 | |
|---|---|---|---|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기적 감재정 용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 서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우 수 | |
| | | | 보 통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 미 흡 | |
| | | 담 당 확 인 |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2호 서식]

#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기적 감재 정용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 서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 | | 불합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신설>

#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순 위 | | | 소 속 | 성 명 | 총평정점 | 점수산출내역 | | |
|---|---|---|---|---|---|---|---|---|
| 최초 | 조정 | 조정 | | |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시험성적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 | | | | | | | | |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 |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br>1. ~ 5. (생 략)<br>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br><신 설>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 서명·날인--------.<br>1. ~ 5. (현행과 같음)<br>② 제1항의 규정----------.<br>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

| | |
|---|---|
| |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
|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
|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 |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
|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 |
|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
|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
|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 | |
|---|---|
| 수 있다. | |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 사람은 ----------. |
|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신규임용시험 ---------- 사람은 ----------. ----------. |
|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 ----------. |

| | |
|---|---|
| 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②----------.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 ---------- 3일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③ (생 략)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 ④ ---------- |

| | |
|---|---|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연령·학력, ----------. |
|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
|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 |
|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2조(시험위원) ① ---------- 매 과목 ---------- 하여야 ----------.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범위 안---------.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단서 삭제> ----------. <후단 삭제>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

| | |
|---|---|
| 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에 만점을 1퍼센트 이내로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삭제> |
|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 | ② ---------- |

| | |
|---|---|
| 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공무원신규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 2개 이상----------. ---------- 더한다. |
|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 <삭 제>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 ④ 제2항---------- 사람---------. |
|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 ---------- 사람은 ---------- 사람으로 한다. |
| ③ 삭 제 | |
|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 | ④ ---------- 제6조의 규정----------. ---------- |

| | |
|---|---|
| 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 |
|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 제6조의 규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 | ⑥ ---------- 경력경쟁임용시험 ----------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 |

| | |
|---|---|
| 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⑦ ---------- 제6조의 규정----------. |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⑧ 제1항 내지 ----------. ---------- ------. |
|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 같다. | ⑨ ----------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 |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

| | |
|---|---|
|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 ----------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 |
|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 ① ~ ④ (생 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삭 제> |
|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 | <삭 제> |

| | |
|---|---|
| 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
|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사람은 ----------. |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 |

| | |
|---|---|
| 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정----------. |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의하여 ----------. |
|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

| | |
|---|---|
|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
|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 범위 안----------.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
| <신 설> |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
| |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br>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br>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br>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
| 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br><신 설><br><신 설> | 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br>②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br>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

| | |
|---|---|
| |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
|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br>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br>① ---------- 본청----------. ----------.<br>② -- 본청----------. ----------. |
| 제26조의3(섬·벽지 근무자의 교류)<br>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섬·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자에 전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의3(섬·벽지 근무자의 교류)<br>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 사람에 대하여 ----------. |

| | |
|---|---|
| ② 제1항의 섬·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섬·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 ② ---------- 사람을 ----------. |
|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생 략)<br>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br>② ----------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제34조에 따른 ---------- 사람은 ----------. |

하동군 공고 제2021-1414호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3. 주요내용**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개정

**가.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삭제(3종)**

-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한 경우 징수대상에서 제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 5,000원)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1건 5,000원)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1건 800원)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삭제(94종)**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공장등록 증명 외 93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055-880-2292, FAX 055-880-2279

○ 이메일 jiny471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붙 임 1.「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안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 구 분 | 기준 | 요 액(원) | 비 고 |
|---|---|---|---|
| **〈 증 명 〉** | | | |
| 1. 사실에 관한 증명 | | | |
| (1) 경력증명서 | 1통 | 500 | |
| (2)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1통 | 500 | |
|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1통 | 1,000 | |
| (4) 호(제)적멸실확인 | 1통 | 1,000 | |
|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1)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500 | |
| (2)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500 | |
|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500 | |
| (4) 환지 예정지 분할 | 1필지 | 500 | |
|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필지 | 500 | |
| (6) 환지(예정지)증명 | 1필지 | 500 | |
| 3.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 1통 | 500 | |
| (2) 경력확인서 | 1통 | 500 | |
| 4. 그 밖의 증명 | | | |
|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통 | 500 | |
|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 (1) 공유재산의 대부 | 1통 | 5,000 | |
|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 1통 | 3,000 | |
| (3)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1매 | 500 | |
| 2. 농수산 관계 | | | |
| (1)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 1건 | 2,500 | |
| (2) 어업권(지분)이전등록 | 1건 | 1,500 | |
| (3) 어업허가 지위승계 | 1건 | 4,000 | |
| (4)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건 | 1,000 | |
| (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1건 | 4,000 | |
| (6) 어획물운반업 등록 | 1건 | 5,000 | |
| (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 1건 | 2,000 | |

| 구 분 | 기 준 | 요 액(원) | 비 고 |
|---|---|---|---|
| 3. 건설·주택·교통 관계 | | | |
|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500 | |
| (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1건 | 500 | |
| (3)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1건 | 1,000 | |
| (4)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건 | 500 | |
| (5)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4. 보건·위생 관계 | | | |
|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 1건 | 20,000 | |
| (2) 부대사업 개설신고 | 1건 | 40,000 | |
| (3)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1건 | 1,500 | |
| (4)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1건 | 500 | |
| (5)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 1건 | 500 | |
| (6)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1건 | 500 | |
| (7)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3,000 | |
| (8)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신고 | 1건 | 35,000 | |
| (9)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신고 | 1건 | 70,000 | |
| 5. 상수도관계 | | | |
|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 시험수수료 | 1건당 | 4,000 | |
|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br>갱신1건당 | 4,000<br>2,000 | |
|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br>2,000<br>4,000 | |
| (4)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 1건당 | 2,000 | |
|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 계량기구경<br>40㎜미만<br>40㎜이상 | <br>1,000<br>2,000 | |
| (6)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br>2,000<br>4,000 | |
|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br>2,000<br>4,000 | |
| (8)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br>2,000<br>4,000 | |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1〉

# 제증명 등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증 명 > | | | |
| 1. 사실에 관한 증명 | | | |
| (1) 경력증명서 | 1통 | 500 | |
| (2) 공장등록증명 | 1건 | 1,000 | |
| (3)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 1통 | 500 | |
|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 1통 | 1,000 | |
| (5) 호(제)적멸실확인 | 1통 | 1,000 | |
|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1)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500 | |
| (2)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500 | |
|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500 | |
| (4) 환지 예정지 분할 | 1필지 | 500 | |
|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필지 | 500 | |
| (6) 환지(예정지)증명 | 1필지 | 500 | |
|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 (1) 세목별 과세 증명 | 1통 | 800 | |
| 4.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 1통 | 500 | |
| (2) 경력확인서 | 1통 | 500 | |
| 5.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 | | |
|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 800 | |
|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확인서 | 1주택 | 800 | |
| 6. 그 밖의 증명 | | | |
|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 1통 | 500 | |
|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 (1) 공유재산의 대부 | 1통 | 5,000 | |
|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 1통 | 3,000 | |
| (3)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1매 | 500 | |
|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필지 | 1,000 (컬러 발급의 경우 1,5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증 명 > | | | |
| 1. 사실에 관한 증명 | | | |
| (1) 경력증명서 | 1통 | 500 | |
| <삭 제> | | | |
| (3)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 1통 | 500 | |
|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 1통 | 1,000 | |
| (5) 호(제)적멸실확인 | 1통 | 1,000 | |
|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1)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500 | |
| (2)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500 | |
|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500 | |
| (4) 환지 예정지 분할 | 1필지 | 500 | |
|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필지 | 500 | |
| (6) 환지(예정지)증명 | 1필지 | 500 | |
|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 <삭 제> | | | |
| 4.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 1통 | 500 | |
| (2) 경력확인서 | 1통 | 500 | |
| 5.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6. 그 밖의 증명 | | | |
|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 1통 | 500 | |
|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 (1) 공유재산의 대부 | 1통 | 5,000 | |
|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 1통 | 3,000 | |
| (3)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1매 | 500 | |
| <삭 제> | |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2. 문화 관계 | | | |
| (1) 공연장 등록신청 | 1건 | 10,000 | |
|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 1건 | 20,000 | |
|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등록(신고) | 1건 | 5,000 | |
| (5)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 | 1건 | 60,000 | |
| (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신청 | 1건 | 30,000 | |
| 3. 농수산 관계 | | | |
| (1)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30,000 | |
| (2)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20,000 | |
| (3) 관리선 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 1건 | 1,000 | |
| (4)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 1건 | 1,000 | |
| (5) 구획어업 허가신청 | 1건 | 5,000 | |
| (6) 근해어업허가 신청 | 1건 | 5,000 | |
| (7) 낚시 어선업 신고 | 1건 | 3,000 | |
| (8) 내수면어업 면허 | 1건 | 9,000 | |
| (9) 내수면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 1건 | 5,000 | |
| (10) 내수면어업 신고 | 1건 | 1,500 | |
| (11) 내수면어업 허가 | 1건 | 5,000 | |
| (12)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 1건 | 2,500 | |
| (1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1건 | 1,000 | |
| (14)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 1건 | 1,000 | |
| (15) 선적증서 재교부 | 1건 | 1,000 | |
| (16) 수산물가공업 등록 | 1건 | 2,000 | |
| (17) 수산물가공업 신고 | 1건 | 1,500 | |
| (1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신청 | 1건 | 3,000 | |
| (19)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1건 | 4,000 | |
| (20)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 1건 | 4,000 | |
| (21)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1,000 | |
| (22) 어선개조(건조발주) 허가 | 1건 | 1,0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2. 문화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3. 농수산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12)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 1건 | 2,5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23)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 1건 | 2,000 | |
| (2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1,500 | |
| (25) 어선등록 | 1건 | 3,000 | |
| (26) 어선 변경등록 | 1건 | 3,000 | |
| (2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 1건 | 800 | |
| (28) 어업권(지분)이전등록 | 1건 | 1,500 | |
| (29)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 1건 | 4,000 | |
| (30) 어업권보상등의 청구 | 1건 | 2,000 | |
| (31) 어업권분할인가신청 | 1건 | 3,500 | |
| (32) 어업권원부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 1건 | 800 | |
| (33) 어업권의보상등의청구 | 1건 | 2,000 | |
| (34) 어업권 포기 신고 | 1건 | 1,000 | |
| (35) 어업면허신청 | 1건 | 5,000 | |
| (36)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허가 신청 | 1건 | 4,500 | |
| (37)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 (어선 사용승인)증재교부신청 | 1건 | 1,000 | |
| (38) 어업신고 | 1건 | 1,600 | |
| (3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1,600 | |
| (40)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 신고 | 1건 | 1,600 | |
|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 1건 | 4,000 | |
| (42) 어업허가유예 신청 | 1건 | 1,600 | |
| (43)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건 | 1,000 | |
| (44) 어장구역등재결 신청 | 1건 | 3,000 | |
| (4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 1건 | 4,000 | |
|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 1건 | 5,000 | |
|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 1건 | 2,000 | |
| (48) 연안어업허가신청 | 1건 | 3,500 | |
| (49) 유해어법의사용 허가신청 | 1건 | 3,000 | |
| (50) 육상 변경허가 | 1건 | 1,600 | |
| (51)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 1건 | 5,000 | |
| (52) 입어재결신청 | 1건 | 3,000 | |
| (53)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 1건 | 3,0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28) 어업권(지분)이전등록 | 1건 | 1,5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 1건 | 4,000 | |
| <삭 제> | | | |
| (43)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건 | 1,000 | |
| <삭 제> | | | |
| (4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 1건 | 4,000 | |
|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 1건 | 5,000 | |
|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 1건 | 2,0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54) 한시어업 허가 신청 | 1건 | 2,000 | |
| (55) 한시어업 허가 연장 신청 | 1건 | 2,000 | |
| (56)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 1건 | 800 | |
|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 1건 | 1,000 | |
| (58) 허가어업 휴업 신고 | 1건 | 1,000 | |
| (59)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 1건 | 800 | |
| 4. 산업지원 관계 | | | |
| (1)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 1건 | 2,000 | |
|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건 | 1,000 | |
| (3)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 주유소) | 1통 | 20,000 | |
| (4)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 판매소) | 1통 | 10,000 | |
| (5) 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 | 1통 | 10,000 | |
| (6)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 1통 | 20,000 | |
| (7) 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 1통 | 10,000 | |
| 5. 건설·주택·교통 관계 | | | |
| (1)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 1건 | 1,000 | |
|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건 | 1,000 | |
|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건 | 1,000 | |
|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500 | |
|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1건 | 500 | |
|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1건 | 1,000 | |
| (7) 폐천부지 교환신청 | 1건 | 1,000 | |
| (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건 | 500 | |
| (9)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10)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1건 | 5,000 | |
| 6. 부동산중개업 관계 | | | |
| (1)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10,000 | |
|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800 | |
|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 1건 | 20,000 | |
|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 1건 | 30,000 | |
| (5)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 | 800 | |
|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1건 | 800 | |
| 7. 환경 관계 | | | |
|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1건 | 5,0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4. 산업지원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5. 건설·주택·교통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500 | |
|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1건 | 500 | |
|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1건 | 1,000 | |
| <삭 제> | | | |
| (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건 | 500 | |
| (9)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삭 제> | | | |
| 6. 부동산중개업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7. 환경 관계 | | | |
| <삭 제> | |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 5,000 | |
| (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건 | 10,000 | |
| 8. 보건·위생 관계 | | | |
|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 1건 | 20,000 | |
| (2) 부대사업 개설신고 | 1건 | 40,000 | |
| (3)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 1건 | 20,000 | |
| (4)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 | 1건 | 40,000 | |
| (5)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 1건 | 100,000 | |
| (6)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1건 | 1,500 | |
|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 1건 | 500 | |
| (8) 안경업소 개설(양도·양수)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 | |
|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 1건 | 500 | |
|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1건 | 500 | |
|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3,000 | |
| (13)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 | 1건 | 100,000 | |
| (14)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 | 1건 | 40,000 | |
| (15)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 1건 | 40,000 | |
| (16)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 1건 | 20,000 | |
| (1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양도양수 포함) | 1건 | 10,000 | |
| (1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 | |
| (19)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 신고 | 1건 | 35,000 | |
| (20)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 신고 | 1건 | 70,000 | |
| 9. 체육시설 관계 | | | |
| (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2)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 30,0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삭 제> | | | |
| <삭 제> | | | |
| 8. 보건·위생 관계 | | | |
|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 1건 | 20,000 | |
| (2) 부대사업 개설신고 | 1건 | 40,0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6)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1건 | 1,500 | |
|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 1건 | 5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 1건 | 500 | |
|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 1건 | 500 | |
|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3,000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 (19)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 신고 | 1건 | 35,000 | |
| (20)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 신고 | 1건 | 70,000 | |
| 9. 체육시설 관계 | | | |
| <삭 제> | | | |
| <삭 제> | |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 현 행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10. 상수도관계 | | | |
|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 수수료 | 1건당 | 4,000 | |
|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사공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br>갱신1건당 | 4,000<br>2,000 | |
|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4) 급수공사 사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 1건당 | 2,000 | |
|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 계량기구경<br>40㎜미만<br>40㎜이상 | 1,000<br>2,000 | |
| (6) 사공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8)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 개 정 안 | | |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10. 상수도관계 | | | |
|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 수수료 | 1건당 | 4,000 | |
|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사공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br>갱신1건당 | 4,000<br>2,000 | |
|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4) 급수공사 사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 1건당 | 2,000 | |
|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 계량기구경<br>40㎜미만<br>40㎜이상 | 1,000<br>2,000 | |
| (6) 사공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 (8)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구경<br>40㎜미만<br>40㎜이상 | 2,000<br>4,000 | |

하동군 공고 제2021-1412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9 월 17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운행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변경 시 고시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게 하여 수시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제3조)
   ○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별표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398, FAX 880-2509, e-mail : bcfarc@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수가 정한”을 “군수는”으로, “마을은 별표 1과 같다”를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동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운행대상 마을)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행대상 마을) ---------- 군수는 ----------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동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 <삭 제> |
| | <삭 제> |

| 읍 면 | 리 | 마을 | 비고 (세부 지역) |
|---|---|---|---|
| 하동읍 | 흥룡리 | 먹점마을 | |
| | 두곡리 | 서재마을 | |
| | 두곡리 | 두곡마을 | 밤골 |
| | 읍내리 | 연신마을 | |
| 화개면 | 탑 리 | 가탄마을 | 백혜 |
| | 용강리 | 모암마을 | 판교 |
| | 운수리 | 목압마을 | 맥전 |
| | 정금리 | 정금마을 | 대비 |
| | 정금리 | 정금마을 | 중촌 |
| | 부춘리 | 부춘마을 | 원부춘 |
| | 범왕리 | 범왕마을 | 목통 |
| | 범왕리 | 신흥마을 | 머그내골 |
| 악양면 | 미점리 | 미동마을 | |
| | 신흥리 | 하신흥마을 | |
| | 신흥리 | 상신흥마을 | |
| | 매계리 | 매계마을 | |
| | 매계리 | 노전마을 | |
| | 정서리 | 주암마을 | |
| | 정서리 | 상신마을 | |
| | 신대리 | 상신대마을 | |

| | | | |
|---|---|---|---|
| 적량면 | 관 리 | 관동마을 | |
| | 관 리 | 율곡마을 | |
| | 동산리 | 영신마을 | |
| | 동 리 | 명천마을 | 새비골 |
| 횡천면 | 전대리 | 전대마을 | 윗전대 |
| | 애치리 | 애치마을 | |
| | 애치리 | 온동마을 | |
| | 학 리 | 개인마을 | |
| 고전면 | 범아리 | 매자마을 | |
| | 성평리 | 신덕마을 | |
| | 대덕리 | 잔너리마을 | |
| | 고하리 | 고하마을 | |
| 금남면 | 대치리 | 대치마을 | 진구지 |
| | 진정리 | 금오마을 | |
| | 계천리 | 계항마을 | |
| | 덕천리 | 상삼천마을 | |
| | 덕천리 | 하삼천마을 | |
| 금성면 | 궁항리 | 객길마을 | |
| | 갈사리 | 서근마을 | 해양파크빌 |
| 진교면 | 고룡리 | 남양마을 | |
| | 송원리 | 화포마을 | |
| | 양포리 | 양일(발꾸미)마을 | |
| | 안심리 | 안심마을 | |
| | 관곡리 | 반석마을 | |
| 양보면 | 장암리 | 우성마을 | |
| | 지례리 | 가락마을 | |
| 북천면 | 사평리 | 사평마을 | 배안골 |
| | 직전리 | 이명마을 | 이명골 |
| 청암면 | 중이리 | 심답마을 | |
| 옥종면 | 월횡리 | 고암마을 | 윗고암 |
| | 병천리 | 가덕마을 | 산성 |
| | 법대리 | 법대마을 | 멧골・가야골 |
| | 대곡리 | 동곡마을 | |
| | 대곡리 | 한계마을 | |
| | 회신리 | 양지마을 | 내회신 |

<삭 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1-1337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 하 동 군 수

| | | | | |
|---|---|---|---|---|
| 시행자<br>(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사 | | |
| | 대표자<br>(성 명)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 소하천명 | | 신안천 | |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치 | 진교면 백련리 산 104-1 | | |
| | 면적 | 102㎡ | 폐천부지(廢川敷地)<br>예상 면적 | ㎡ |
| | 기간 | 2021. 9. ~ 영구<br>※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 | |
| | 목적 및 사유 | 지1003호선 백련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하동군 공고 제2021- 1326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 2021년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장 소 : 군청 재정관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군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정관리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055-880-2298, 2288)

2021년 9월 1일

하 동 군 수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1-1344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 하 동 군 수

| | | | | |
|---|---|---|---|---|
| 시행자<br>(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 |
| | 대표자<br>(성 명) | 장대생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계동 ** |
| 소하천명 | | 묵계천 | |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치 | 청암면 묵계리 1749(인접 : 묵계리 산 316) | | |
| | 면적 | 170㎡ | 폐천부지(廢川敷地)<br>예상 면적 | ㎡ |
| | 기간 | 2021. 06. 29. ~ 2026. 06. 28.<br>※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 | |
| | 목적 및 사유 |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21-1347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 예정인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사 업 명 | 위 치 | 비 고 |
|---|---|---|---|
| 하천공사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 하동읍 두곡리 일원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하동군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출입목적** :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관련 등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토지조서 참조
5.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6.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시 까지
7. **문의사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3)

# <토지조서>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 | 군 | 면 | 리 | 지번 | | (㎡) | (㎡) | 주 소 | 성 명 |
| 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8-2 | 답 | 126 | 16 | 987 | 최복* |
| 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6-2 | 도 | 2,463 | 794 | 국토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 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3 | 도 | 25 | 25 | 하동군 | 공유지 |
| 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6 | 장 | 331 | 88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976-2 | 고서마을회 |
| 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4 | 도 | 25 | 25 | 하동군 | 공유지 |
| 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4-4 | 창 | 330 | 40 | 775-1 | 황호* |
| 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7-11 | 도 | 32 | 32 | 하동군 | 공유지 |
| 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7-8 | 답 | 61 | 61 | 부산 사하구 괴정동 352-33하이츠빌리지 206호 | 양재* |
| 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1 | 답 | 163 | 163 | 하동군 | 공유지 |
| 1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5 | 도 | 82 | 82 | 하동군 | 공유지 |
| 1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31-3 | 도 | 1,339 | 1152 | | 국(국토교통부) |
| 1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2 | 도 | 959 | 959 | | 국(국토교통부) |
| 1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4-1 | 답 | 3,628 | 4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93 | 유석* |
| 1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 | 답 | 2,498 | 1764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0-100 일신보라아파트105-1701 | 이승* |
| 1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2 | 답 | 7 | 7 | 하동군 | 공유지 |
| 1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4 | 도 | 14 | 14 | 하동군 | 공유지 |
| 1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4 | 도 | 36 | 36 | 하동군 | 공유지 |
| 1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3 | 답 | 53 | 53 | 부산 사하구 괴정동 352-33 하이츠빌리지206호 | 양재* |
| 1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2 | 답 | 182 | 169 | 읍내동 319 | 장윤* |
| 2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3 | 도 | 135 | 41 | 읍내동 319 | 장윤* |
| 2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답 | 2,075 | 1360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2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3 | 답 | 17 | 17 | 읍내동 1108 | 이선* |
| 2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3 | 답 | 4,010 | 481 | 화심리 411 | 고재* |
| 2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1 | 답 | 1,871 | 536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2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7-1 | 묘 | 5,415 | 205 | 하동군 | 공유지 |
| 2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7-2 | 묘 | 496 | 300 | 하동군 | 공유지 |
| 2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32 | 도 | 321 | 133 | | 국(국토교통부) |
| 2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6 | 도 | 76 | 76 | 하동군 | 공유지 |
| 2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1 | 답 | 393 | 393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413-16 | 강판* |
| 3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3 | 도 | 1,669 | 1146 | | 국(국토교통부) |
| 3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1 | 도 | 89 | 89 | 하동군 | 공유지 |
| 3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임 | 4,132 | 52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3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3 | 도 | 295 | 116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3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8-1 | 도 | 96 | 3 | | 국(국토교통부) |
| 3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9 | 도 | 253 | 220 | 하동군 | 공유지 |
| 3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8 | 도 | 111 | 111 | 하동군 | 공유지 |
| 3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2 | 창 | 549 | 549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3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7 | 도 | 30 | 30 | 하동군 | 공유지 |
| 3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6 | 제 | 90 | 90 | | 국(국토교통부) |
| 4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5 | 구 | 327 | 327 | 하동읍 읍내동 1294-1 | 김석* |
| 4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3 | 구 | 512 | 478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39-3 욱일아파트에이동 512호 | 여명* |
| 4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잡 | 11,363 | 725 | 하동읍 읍내동 1294-1 | 김석* |
| 4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4 | 제 | 2,212 | 2212 | | 국(국토교통부) |
| 4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2 | 구 | 2,945 | 1688 | 하동군 | 공유지 |
| 4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6 | 제 | 119 | 55 | | 국(국토교통부) |
| 4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5-3 | 답 | 1,372 | 5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37 | 신종* |
| 4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답 | 1,256 | 172 | 섬진강대로 2334 | 장동엽 외 1인 |
| 4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답 | 1,033 | 41 | 섬진강대로 2335 | 장동엽 외 2인 |
| 4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3 | 답 | 929 | 929 | 목도리 63-3 | 남형* |
| 5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 | 잡 | 998 | 998 | 목도리 63-3 | 남형* |
| 5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5 | 제 | 716 | 716 | | 국(국토교통부) |
| 5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1 | 임 | 542 | 41 | 읍내동 218-13 | 하동농지개량조합 |
| 5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6 | 제 | 119 | 119 | 미점리 340 | 국(국토교통부) |
| 5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1 | 답 | 13 | 3 | 읍내동 449-3 | 윤화* |
| 5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2 | 제 | 152 | 142 | | 국(국토교통부) |
| 5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93-3 | 구 | 6,664 | 1203 | | 국(국토교통부) |
| 5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잡 | 1,000 | 27 | 섬진강대로 2335 | 장동엽 외 2인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 | 군 | 면 | 리 | 지번 | | (㎡) | (㎡) | 주소 | 성명 |
| 5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2 | 도 | 2 | 2 | *(비고) 토지대장확인 | 국(국토해양부) |
| 5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1 | 전 | 69 | 69 | 789 | 이재* |
| 6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0 | 도 | 158 | 158 | | 국(국토해양부) |
| 6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2 | 답 | 83 | 83 | 읍내동 927 | 조재* |
| 6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316-1 | 구 | 14,651 | 3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6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1 | 제 | 145 | 108 | 두곡리 446 | 김두* |
| 6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2 | 답 | 311 | 117 | 두곡리 446 | 김두* |
| 6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3 | 구 | 595 | 595 | 두곡리 446 | 김두* |
| 6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59-1 | 답 | 1,955 | 12 | 읍내리 1294-1 | 이맹* |
| 6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3 | 제 | 460 | 363 | 읍내동 927 | 조재* |
| 6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305 | 도 | 2,046 | 160 | | 국(국토교통부) |
| 6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3-2 | 전 | 383 | 242 | 789 | 이재* |
| 7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4 | 제 | 194 | 83 | 789 | 이정* |
| 7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14 | 제 | 297 | 201 | 789 | 이정* |
| 7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6 | 도 | 1,906 | 152 | | 국(국토교통부) |
| 7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1 | 도 | 79 | 56 | | 국(국토교통부) |
| 7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5 | 제 | 102 | 20 | | 국(국토교통부) |
| 7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694-3 | 도 | 2,314 | 130 | | 국(국토교통부) |
| 7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3 | 도 | 149 | 65 | | 국(국토교통부) |
| 7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4 | 전 | 1,161 | 227 | | 국(국토교통부) |
| 7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1 | 도 | 251 | 133 | | 국(국토교통부) |
| 7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4 | 천 | 537 | 372 | 1122 | 김태* |
| 8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2-1 | 천 | 2,928 | 42 | | 국(국토교통부) |
| 8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2 | 천 | 1,093 | 113 | 1122 | 김태* |
| 8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3 | 도 | 416 | 134 | 하동군 | 공유지 |
| 8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 | 과 | 960 | 91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06-4 | 박영* |
| 8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2 | 임 | 496 | 496 | 하동군 | 공유지 |
| 8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4 | 도 | 20 | 20 | 하동군 | 공유지 |
| 8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8 | 도 | 9 | 9 | 하동군 | 공유지 |
| 8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5 | 도 | 10 | 10 | 하동군 | 공유지 |
| 8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1 | 도 | 26 | 26 | 하동군 | 공유지 |
| 8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4 | 도 | 36 | 4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9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7 | 답 | 66 | 66 | 하동군 | 공유지 |
| 9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3 | 도 | 36 | 36 | 하동군 | 공유지 |
| 9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2 | 도 | 10 | 10 | 하동군 | 공유지 |
| 9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6 | 도 | 188 | 13 | 하동군 | 공유지 |
| 9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2 | 도 | 20 | 20 | 하동군 | 공유지 |
| 9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7 | 대 | 320 | 12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94-5 | 박영* |
| 9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7-4 | 도 | 62 | 51 | 하동군 | 공유지 |
| 9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7-2 | 도 | 93 | 40 | 미점리 250-1 | 강득* |
| 9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3 | 답 | 78 | 78 | 하동읍 마방길 8 | 신양* |
| 9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창 | 3,829 | 136 | 하동읍 화심길 44 | 여길* |
| 10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1 | 답 | 4,465 | 114 | 하동읍 마방길 8 | 신양* |
| 10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4 | 창 | 57 | 57 | 하동읍 화심길 44 | 여길* |
| 10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 | 답 | 3,331 | 586 |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70번길 47 | 정옥* |
| 10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1 | 답 | 560 | 132 | 하동군 | 공유지 |
| 10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10 | 구 | 15,699 | 67 | | 국(국토교통부) |

하동군공고 제2021-1348호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나. 사 업 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다. 위 치 : 하동군 두곡리 일원
라. 사 업 규 모 : 고지배수로 690m 설치, 수문펌프 1식 설치, 도로이설 L=447.0m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5개월간

### 2. 보상대상 : 토지(104필지, 27,074㎡) 지장물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안전총괄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3. 공고기간 : 2021.9.3. ~ 2021.9.17.(15일간)

### 4. 이의신청 및 열람기간 : 2021.9.3. ~ 2021.9.17.(15일간)

###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부서(☏ 055-880-25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별관 2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880-2533)**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 추천업체 :
○ 추 천 일 : 2021. . .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자확인 | 전화번호 | 비고 |
|---|---|---|---|---|---|---|---|
|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이 의 신 청 서

| | | | | |
|---|---|---|---|---|
| ① 사 업 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 | | |
| ② 위 치 | | | | |
| ③ 사 업 시 행 자 | 하동군수 | | | |
|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토지조서>

| 연번 | 토지소재지 군 | 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주소 | 성명 |
|---|---|---|---|---|---|---|---|---|---|
| 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8-2 | 답 | 126 | 16 | 987 | 최복* |
| 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6-2 | 도 | 2,463 | 794 | 국토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 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3 | 도 | 25 | 25 | 하동군 | 공유지 |
| 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6 | 장 | 331 | 88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976-2 | 고서마을회 |
| 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5-4 | 도 | 25 | 25 | 하동군 | 공유지 |
| 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4-4 | 창 | 330 | 40 | 775-1 | 황호* |
| 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7-11 | 도 | 32 | 32 | 하동군 | 공유지 |
| 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7-8 | 답 | 61 | 61 | 부산 사하구 괴정동 352-33하이츠빌리지 206호 | 양재* |
| 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1 | 답 | 163 | 163 | 하동군 | 공유지 |
| 1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5 | 도 | 82 | 82 | 하동군 | 공유지 |
| 1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31-3 | 도 | 1,339 | 1152 | | 국(국토교통부) |
| 1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00-2 | 도 | 959 | 959 | | 국(국토교통부) |
| 1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4-1 | 답 | 3,628 | 4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93 | 유석* |
| 1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 | 답 | 2,498 | 1764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0-100 일신보라아파트105-1701 | 이승* |
| 1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2 | 답 | 7 | 7 | 하동군 | 공유지 |
| 1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4 | 도 | 14 | 14 | 하동군 | 공유지 |
| 1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4 | 도 | 36 | 36 | 하동군 | 공유지 |
| 1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3-3 | 답 | 53 | 53 | 부산 사하구 괴정동 352-33 하이츠빌리지206호 | 양재* |
| 1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2 | 답 | 182 | 169 | 읍내동 319 | 장윤* |
| 2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3 | 도 | 135 | 41 | 읍내동 319 | 장윤* |
| 2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답 | 2,075 | 1360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2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8-3 | 답 | 17 | 17 | 읍내동 1108 | 이선* |
| 2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3 | 답 | 4,010 | 481 | 화심리 411 | 고재* |
| 2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1 | 답 | 1,871 | 536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2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7-1 | 묘 | 5,415 | 205 | 하동군 | 공유지 |
| 2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7-2 | 묘 | 496 | 300 | 하동군 | 공유지 |
| 2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32 | 도 | 321 | 133 | | 국(국토교통부) |
| 2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6 | 도 | 76 | 76 | 하동군 | 공유지 |
| 2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1 | 답 | 393 | 393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413-16 | 강판* |
| 3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3 | 도 | 1,669 | 1146 | | 국(국토교통부) |
| 3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1 | 도 | 89 | 89 | 하동군 | 공유지 |
| 3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임 | 4,132 | 52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3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3 | 도 | 295 | 116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3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8-1 | 도 | 96 | 3 | | 국(국토교통부) |
| 3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9 | 도 | 253 | 220 | 하동군 | 공유지 |
| 3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8 | 도 | 111 | 111 | 하동군 | 공유지 |
| 3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2 | 창 | 549 | 549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277번길 31 | 하갑* |
| 3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7 | 도 | 30 | 30 | 하동군 | 공유지 |
| 3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6 | 제 | 90 | 90 | | 국(국토교통부) |
| 4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5 | 구 | 327 | 327 | 하동읍 읍내동 1294-1 | 김석* |
| 4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3 | 구 | 512 | 478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39-3 욱일아파트에이동 512호 | 여명* |
| 4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잡 | 11,363 | 725 | 하동읍 읍내동 1294-1 | 김석* |
| 4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4 | 제 | 2,212 | 2212 | | 국(국토교통부) |
| 4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2 | 구 | 2,945 | 1688 | 하동군 | 공유지 |
| 4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6 | 제 | 119 | 55 | | 국(국토교통부) |
| 4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5-3 | 답 | 1,372 | 5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37 | 신종* |
| 4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답 | 1,256 | 172 | 섬진강대로 2334 | 장동엽 외 1인 |
| 4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답 | 1,033 | 41 | 섬진강대로 2335 | 장동엽 외 2인 |
| 4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3 | 답 | 929 | 929 | 목도리 63-3 | 남형* |
| 5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 | 잡 | 998 | 998 | 목도리 63-3 | 남형* |
| 5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5 | 제 | 716 | 716 | | 국(국토교통부) |
| 5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1 | 임 | 542 | 41 | 읍내동 218-13 | 하동농지개량조합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 | 군 | 면 | 리 | 지번 | | (㎡) | (㎡) | 주소 | 성명 |
| 5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6 | 제 | 119 | 119 | 미점리 340 | 국(국토교통부) |
| 5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1 | 답 | 13 | 3 | 읍내동 449-3 | 윤화* |
| 5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2 | 제 | 152 | 142 | | 국(국토교통부) |
| 5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93-3 | 구 | 6,664 | 1203 | | 국(국토교통부) |
| 5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잡 | 1,000 | 27 | 섬진강대로 2335 | 장동엽 외 2인 |
| 5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2 | 도 | 2 | 2 | *(비고) 토지대장확인 | 국(국토해양부) |
| 5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1 | 전 | 69 | 69 | 789 | 이재* |
| 6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0 | 도 | 158 | 158 | | 국(국토해양부) |
| 6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2 | 답 | 83 | 83 | 읍내동 927 | 조재* |
| 6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316-1 | 구 | 14,651 | 3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6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1 | 제 | 145 | 108 | 두곡리 446 | 김두* |
| 6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2 | 답 | 311 | 117 | 두곡리 446 | 김두* |
| 6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3 | 구 | 595 | 595 | 두곡리 446 | 김두* |
| 6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59-1 | 답 | 1,955 | 12 | 읍내리 1294-1 | 이맹* |
| 6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3 | 제 | 460 | 363 | 읍내동 927 | 조재* |
| 6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305 | 도 | 2,046 | 160 | | 국(국토교통부) |
| 6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3-2 | 전 | 383 | 242 | 789 | 이재* |
| 7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4 | 제 | 194 | 83 | 789 | 이정* |
| 7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14 | 제 | 297 | 201 | 789 | 이정* |
| 7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6 | 도 | 1,906 | 152 | | 국(국토교통부) |
| 7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1 | 도 | 79 | 56 | | 국(국토교통부) |
| 7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5 | 제 | 102 | 20 | | 국(국토교통부) |
| 7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694-3 | 도 | 2,314 | 130 | | 국(국토교통부) |
| 7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3 | 도 | 149 | 65 | | 국(국토교통부) |
| 7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1-4 | 전 | 1,161 | 227 | | 국(국토교통부) |
| 7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1 | 도 | 251 | 133 | | 국(국토교통부) |
| 7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4 | 천 | 537 | 372 | 1122 | 김태* |
| 8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2-1 | 천 | 2,928 | 42 | | 국(국토교통부) |
| 8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2 | 천 | 1,093 | 113 | 1122 | 김태* |
| 8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3 | 도 | 416 | 134 | 하동군 | 공유지 |
| 8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 | 과 | 960 | 91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06-4 | 박영* |
| 8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2 | 임 | 496 | 496 | 하동군 | 공유지 |
| 8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4 | 도 | 20 | 20 | 하동군 | 공유지 |
| 8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8 | 도 | 9 | 9 | 하동군 | 공유지 |
| 8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5 | 도 | 10 | 10 | 하동군 | 공유지 |
| 8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1 | 도 | 26 | 26 | 하동군 | 공유지 |
| 8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4 | 도 | 36 | 4 | 부산 사하구 괴정동 147 | 김승* |
| 9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7 | 답 | 66 | 66 | 하동군 | 공유지 |
| 9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3 | 도 | 36 | 36 | 하동군 | 공유지 |
| 9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2 | 도 | 10 | 10 | 하동군 | 공유지 |
| 9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6 | 도 | 188 | 13 | 하동군 | 공유지 |
| 9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4-2 | 도 | 20 | 20 | 하동군 | 공유지 |
| 9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7 | 대 | 320 | 12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94-5 | 박영* |
| 9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7-4 | 도 | 62 | 51 | 하동군 | 공유지 |
| 9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7-2 | 도 | 93 | 40 | 미점리 250-1 | 강득* |
| 9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3 | 답 | 78 | 78 | 하동읍 마방길 8 | 신양* |
| 9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창 | 3,829 | 136 | 하동읍 화심길 44 | 여길* |
| 10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1 | 답 | 4,465 | 114 | 하동읍 마방길 8 | 신양* |
| 10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4 | 창 | 57 | 57 | 하동읍 화심길 44 | 여길* |
| 10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 | 답 | 3,331 | 586 |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70번길 47 | 정옥* |
| 10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1 | 답 | 560 | 132 | 하동군 | 공유지 |
| 10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1610 | 구 | 15,699 | 67 | | 국(국토교통부) |

# 하동군 공고 제2021-1349호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하동군 악양면 일원의 악양천 개선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9.3.

**하 동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사업의 명칭 등

| 사업의 명칭 | 사업의종류 | 사업예정지 | 목　적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 하천정비사업 | 하동군 두곡리 일원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 -고지배수로 L=690m<br>-도로이설 L=447.0m<br>-수문펌프1식<br>-부대공 1식 등 | 2021.10. ~ 2022.12. (15개월간) |

2. 관계서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방법

가. 열람장소 : 하동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나.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533)

하동군 공고 제2021 - 1356 호

#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양식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 하 동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 종 류 | 양식방법 | 품 종 | 어 장 위 치 | 면 적 (ha) | 면허일자 | 면허기간 | 양식업권자 | 비 고 |
|---|---|---|---|---|---|---|---|---|---|
| 하동양식 제53호 | 어류등 양식업 | 가두리식 | 어 류 | 금남면 대도리 지 선 | 2 | 2021.09.06 | 2021.09.08 2031.09.07 | 이*기 외 4명 | 하동양식 제30호 재개발 |

□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공고 제2021-1359호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하 동 군 수

1. 전자우편 주소 : hadong12@korea.kr

2. 접수기간 : 2021. 10. 10.(일) ~ 2022. 1. 8.(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하동군 공고 제 2021 - 1405호

# 흥룡 · 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흥룡 · 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5일

하 동 군 수

1. 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1. 9. 15. ~ 2021. 10. 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9. 15. ~ 2021. 10. 4.(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 지구명 | 위치 | 지정개요 | | | 지정사유 | 비고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 흥룡 호암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05,037 | - 외수위 높고 제내지 지반고 낮아 내수배제 불량,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발생<br>- 소하천 제방 노후화 및 제방고 부족으로 홍수시 제방월류 및 침수피해 발생 | |

##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 (백만원) | 사업내용 | 비고 |
|---|---|---|---|---|
| 흥룡 호암 | 2022년 ~2027년 | 41,060 | - 소하천 정비 L = 7.88km<br>- 하천시설물 8개소<br>- 고지배수로 L=560m, 제수문 설치 1개소<br>-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3개소<br>- 배수로 정비 L = 5.62km<br>- 배수문 확장 2개소(섬진강) | |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 전화 : 055) 880-2513 팩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지형도면 1부 . 끝.

3. 편입토지 세목조서 1부.

# 흥룡·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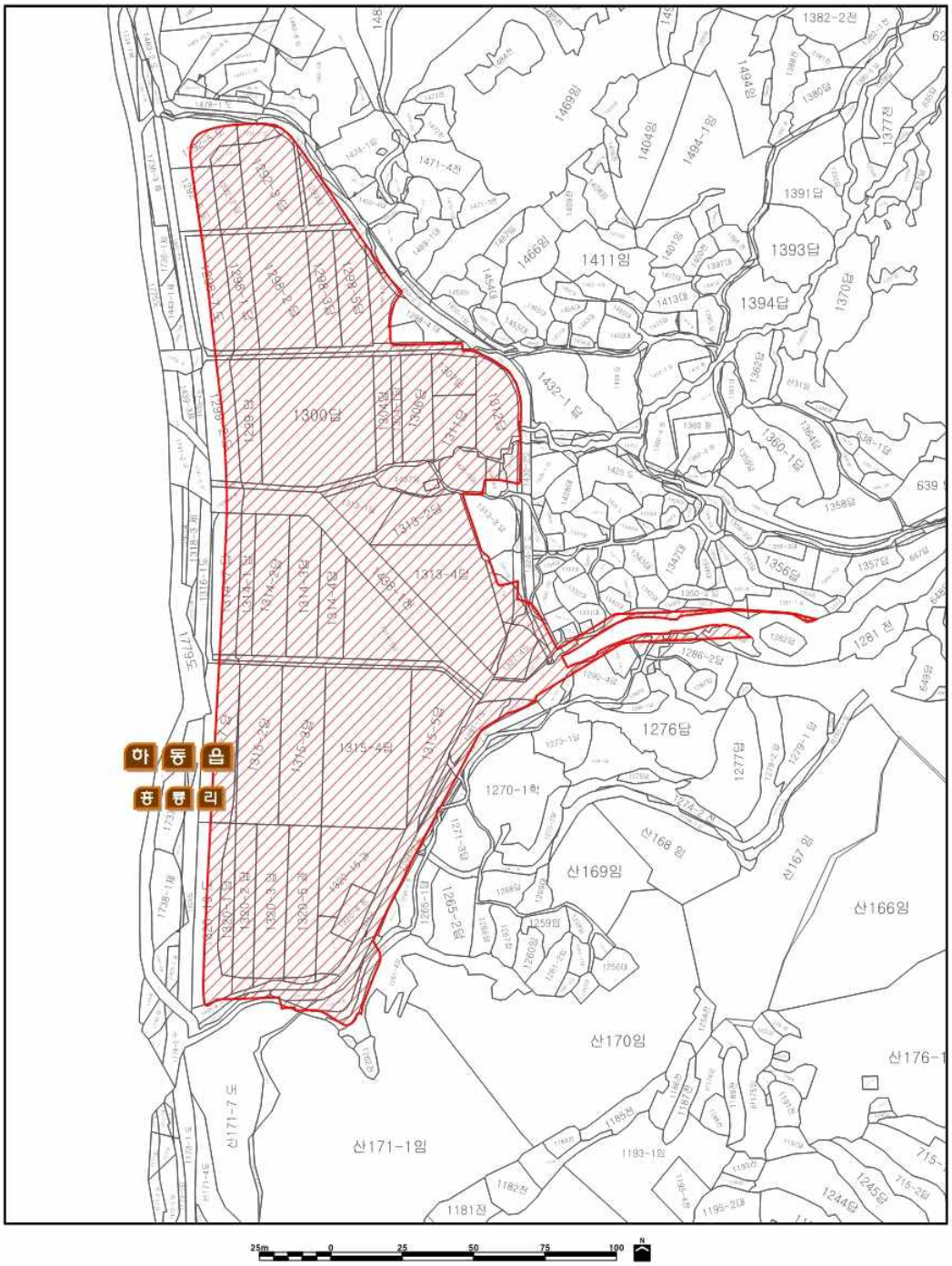


| 구 분 | 입안 및 결정권자 | | | |
|---|---|---|---|---|
| | 작 성 자 | 1차 확인자 | 2차 확인자 | 3차 확인자 |
| 소 속 | (주)이산 | 하동군 건설교통과 | | |
| 직 위 | 이 사 | 주무관 | 담당주사 | 건설교통과장 |
| 직 명 | 사업책임기술자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사무관 |
| 성 명 | 임 종 성 | 최 경 열 | 배 대 근 | 임 종 문 |
| 확 인 인 | | | | |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9월 일
· 고시년도 : 2021년 9월 일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1 - 호
· 작 성 자 : (주) 이산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1
2
3

# 흥룡·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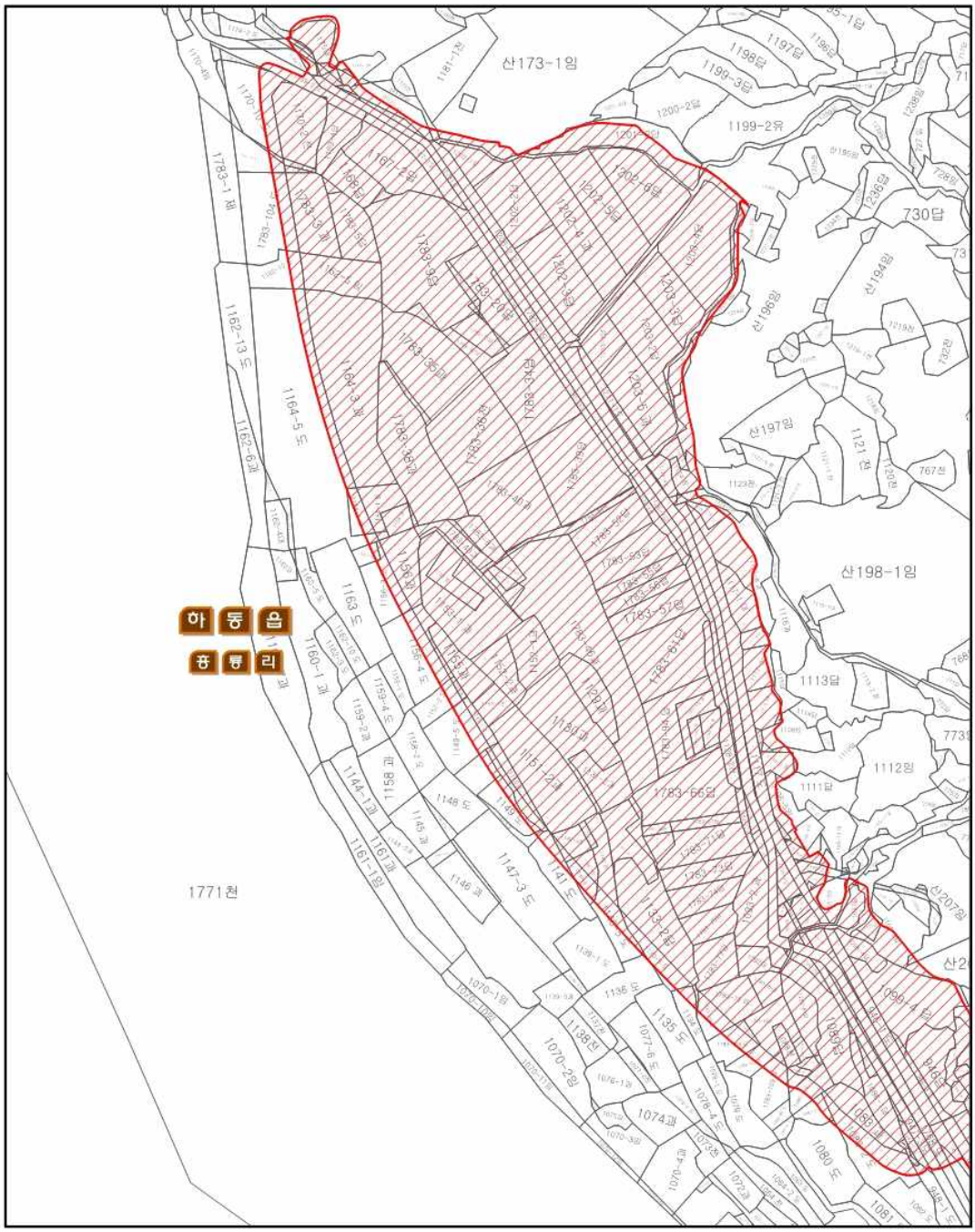


| 구 분 | 입안 및 결정권자 | | | |
|---|---|---|---|---|
| | 작 성 자 | 1차 확인자 | 2차 확인자 | 3차 확인자 |
| 소 속 | (주)이산 | 하동군 건설교통과 | | |
| 직 위 | 이 사 | 주무관 | 담당주사 | 건설교통과장 |
| 직 명 | 시업책임기술자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사무관 |
| 성 명 | 임 종 성 | 최 경 열 | 배 대 근 | 임 종 문 |
| 확 인 인 | | | | |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9월 일
· 고시년도 : 2021년 9월 일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1 - 호
· 작 성 자 : (주) 이산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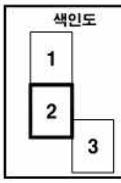

# 흥룡·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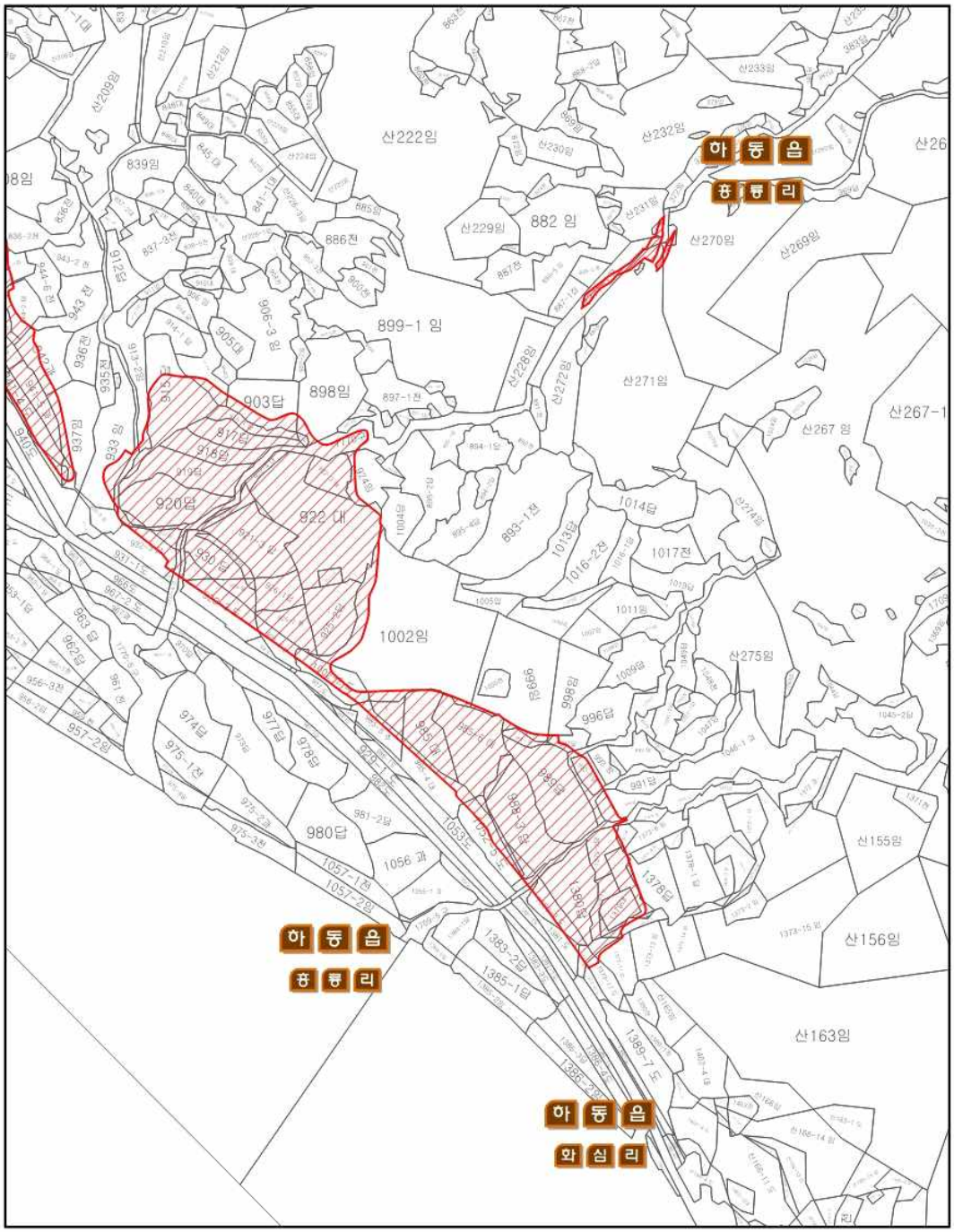


50m 0 50 100 150 200 N

| 구 분 | 입안 및 결정권자 | | | |
|---|---|---|---|---|
| | 작 성 자 | 1차 확인자 | 2차 확인자 | 3차 확인자 |
| 소 속 | (주)이산 | 하동군 건설교통과 | | |
| 직 위 | 이 사 | 주무관 | 담당주사 | 건설교통과장 |
| 직 명 | 사업책임기술자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주사 | 지방시설사무관 |
| 성 명 | 임 종 성 | 최 경 열 | 배 대 근 | 임 종 문 |
| 확 인 인 | | | | |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2021년 9월 일
· 고시년도 : 2021년 9월 일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1 - 호
· 작 성 자 : (주) 이산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1
2
3